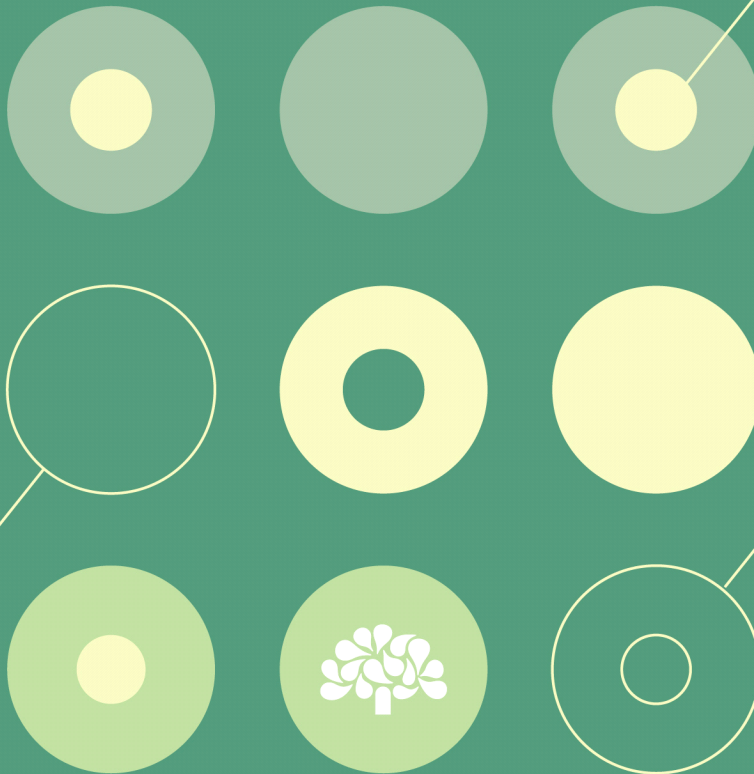


충청남도 간행물등록번호

6441375-2023-000

2022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발간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의무의 주체인 ‘국가’는 국가의 기능을 하는 공적 시스템으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보장 책무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인권기본조례」 제4조에 도지사의 책무로 인권시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할 것, 도민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도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주민, 아동, 청소년 등 인권 약자의 삶이 더욱 피해를지지 않도록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매뉴얼을 만들어 추진해야 합니다. 인권영향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가 도민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있는지와 인권침해 시 구제방안을 마련했는지 나아가 그러한 업무가 도민의 인권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는지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충청남도는 2019년 「충청남도 법제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도가 조례, 규칙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51건, 2020년 110건, 2021년 100건, 2022년 119건의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해마다 3개의 시책을 선정해 인권위원과 인권지킴이단, 당사자와 전문가로 인권영향평가단을 구성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 다루지 않았던 공기업 인권경영, 석탄화력 발전소 인근 주민건강영향조사, 이주배경 아동 보육료 지원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35건의 정책개선 권고를 하였습니다.

인권영향평가는 평가의 대상인 자치법규와 시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인권영향평가 과정에 참여한 평가단 모두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시책 인권영향평가단으로 활동해주신 인권위원, 인권지킴이단, 당사자, 전문가들께 감사드리며 인권영향평가 업무를 추진한 안성대 인권보호관에게도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또한 관련 자료 제출부터 워크숍 참석 등 인권영향평가 전반에 걸쳐 협조해주신 시책 담당 부서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자치법규 및 시책 인권영향평가가 이주민과 장애인, 노동자, 농민 등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다양한 주민이 모두 존중받고 살아가는 충청남도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게 충청남도 인권센터는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김 혜 영 충청남도 인권센터장



목차

● 발간사	2
-------------	---

제1장 2022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개요 7

1. 인권의 정의	9
2. 인권영향평가의 이해	9
3. 인권영향평가 배경 및 필요성	10
4. 인권영향평가 추진 근거	11
5. 인권영향평가 추진 방법	12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12
- 시책 인권영향평가	13

제2장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평가자료 작성 요령 15

1. 담당부서 자체점검표	17
2.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20
3.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부서 의견서	22

제3장 2022 충청남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25

1. 평가 개요	27
2. 평가 기준	27
3. 추진 현황	28
4.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개선 권고 분류	35
5.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추진 실적	61

제4장 2022 충청남도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 67

1. 평가 개요 69
2. 추진 경과 69
3.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기업과 인권’ 체계 견인 및 지원) 73
4.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이주배경 아동의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90
5.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주민건강영향조사의 확대와 강화) 99

참고 111

1. 2021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개선 권고 결과 113
2. 2021년 시책 인권영향평가 개선 권고 결과 117
 - 2021년 시책 인권영향평가 추진 세부 내역 118
3. 통계로 보는 인권영향평가 122
4.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123
5. 충남 도민 인권선언문 132



제1장

2022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개요

1. 인권의 정의
2. 인권영향평가의 이해
3. 인권영향평가 배경 및 필요성
4. 인권영향평가 추진 근거
5. 인권영향평가 추진 방법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 시책 인권영향평가



1 인권의 정의

인권은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말한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천부적 인권을 갖는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는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은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종교,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 언어,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용모 등의 신체조건, 장애, 학력, 병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자유권, 사회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2 인권영향평가의 이해

가.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는 자치법규를 시행함에 있어서 도민의 인권을 침해할만한 요소들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즉 주거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권, 안전권, 환경권, 이동권, 접근권, 노동권, 개인정보 보호권 등의 기본권을 기준으로 인권침해 요소를 점검하고,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조항 내용이나 용어 등이 기본권보장,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도민참여를 기준으로 인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를 제거하는 과정이다.

나. 시책 인권영향평가

시책 인권영향평가는 시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이나 현안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별 특성에 맞는 인권영향평가표를 만들어 해당 분야의 인권이 어떻게 보호되고 실현되는지 점검하여 도 정책을 인권 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다.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는 설계부터 건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인권 및 건축 등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BF(barrier-free, 장애물 없는 환경)',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누구나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라. 사회복지시설 규정 인권영향평가

사회복지시설 규정 인권영향평가는 충청남도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규정을 점검하여 직원의 채용이나 휴가 및 복무 관련 사항, 인권침해 구제수단과 이용인의 인권 보호 및 이용 시 차별 방지 등을 점검하여 기본적 인권을 침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3 인권영향평가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인권영향평가가 법률로 제도화 되어 있지 않지만 지자체별로 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9조(인권영향평가)에 “도지사는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자치법규, 시책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은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로 인권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어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인권증진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는 자치법규와 시책 등이 인권 규범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4

인권영향평가 추진 근거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에서는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을 자치법규와 시책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관련해 도지사에게 정책제도 개선 권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의 경우 「충청남도 법제사무처리규정」에서 도에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조례나 규칙은 반드시 인권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및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부서에서는 도 인권센터에 인권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9조, 제14조, 제19조

- 제2장 보호 및 증진사업

제9조(인권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규칙
2. 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시책 등

- 제3장 인권위원회

제14조(설치 등)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4.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제4장 인권센터

제19조(설치·운영)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충청남도 법제사무처리규정」

- 제2장 입법계획 수립 및 입법 의견 수렴

제5조(입법안 협의 등) ③ 주관과장은 조례·규칙 입법안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담당하는 관계 부서의 장에게 보내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성별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인권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 제3장 입법안 심사 등

제8조(제2차 법제심사) ① 주관과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결과를 반영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담당관의 심사(제2차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7. 인권영향평가 결과통보서

5

인권영향평가 추진 방법

가.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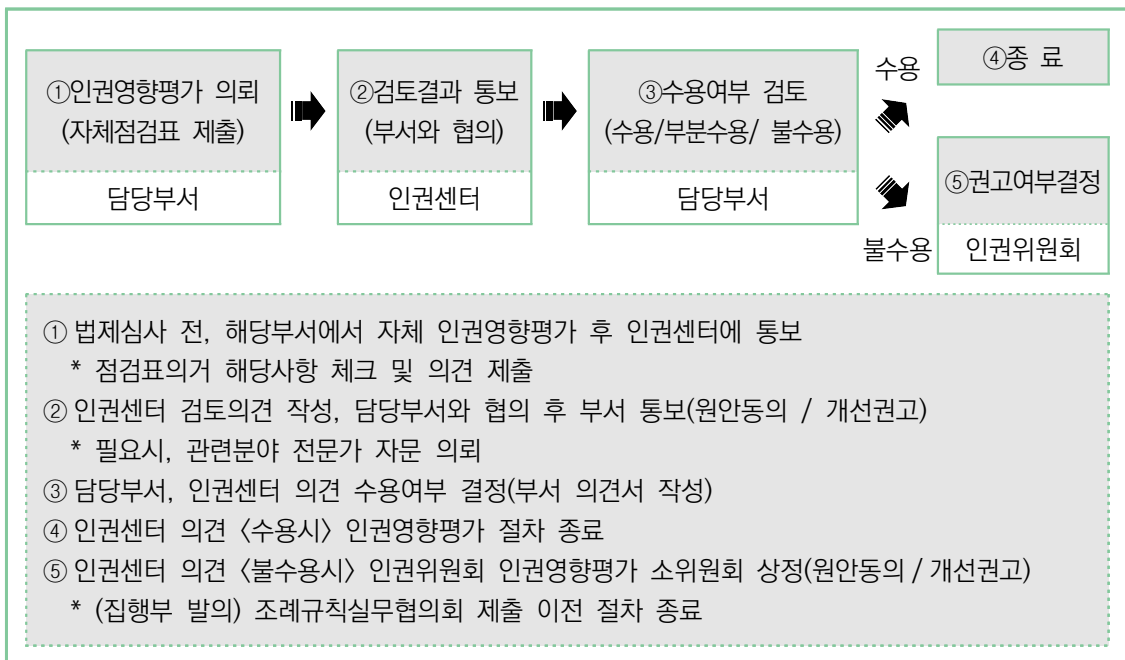
충청남도에서 제·개정을 추진하는 모든 조례와 규칙은 법제심사 전 인권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조례·규칙을 제·개정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자치법규에 대해 자체 점검표를 작성하여 도 인권센터에 인권영향평가를 의뢰한다. 도 인권센터는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타 지자체 조례와 비교검토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담당 부서와 협의한다.

이때 개선할 사항이 없다면 절차는 종료되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 권고를 통지하게 된다. 개선 권고를 통지받은 담당 부서는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수용 여부(수용, 부분수용, 불수용) 의견을 도 인권센터에 회신하는데 불수용 시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권고 여부를 다시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담당 부서에 통지한다.

➡ 평가대상 및 시기

- 평가대상 : 제·개정 추진하는 모든 조례·규칙(의원발의 제외)
- 평가시기 : 법제심사 전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평가 흐름



나. 시책 인권영향평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 중 도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책 가운데 도 인권위원회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선정된 시책을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평가 대상 선정 후 담당 부서와 시책 인권영향평가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여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시책이 선정되면 도 인권센터에서는 각 평가 대상별 시책 인권영향평가단을 6명 이내로 구성한다. 시책 인권영향평가단은 인권위원, 도민인권지킴이단, 당사자, 관련 전문가, 인권보호관으로 구성하고, 평가단은 해당 시책에 대해 인권적 측면을 고려한 객관적 인권영향평가표를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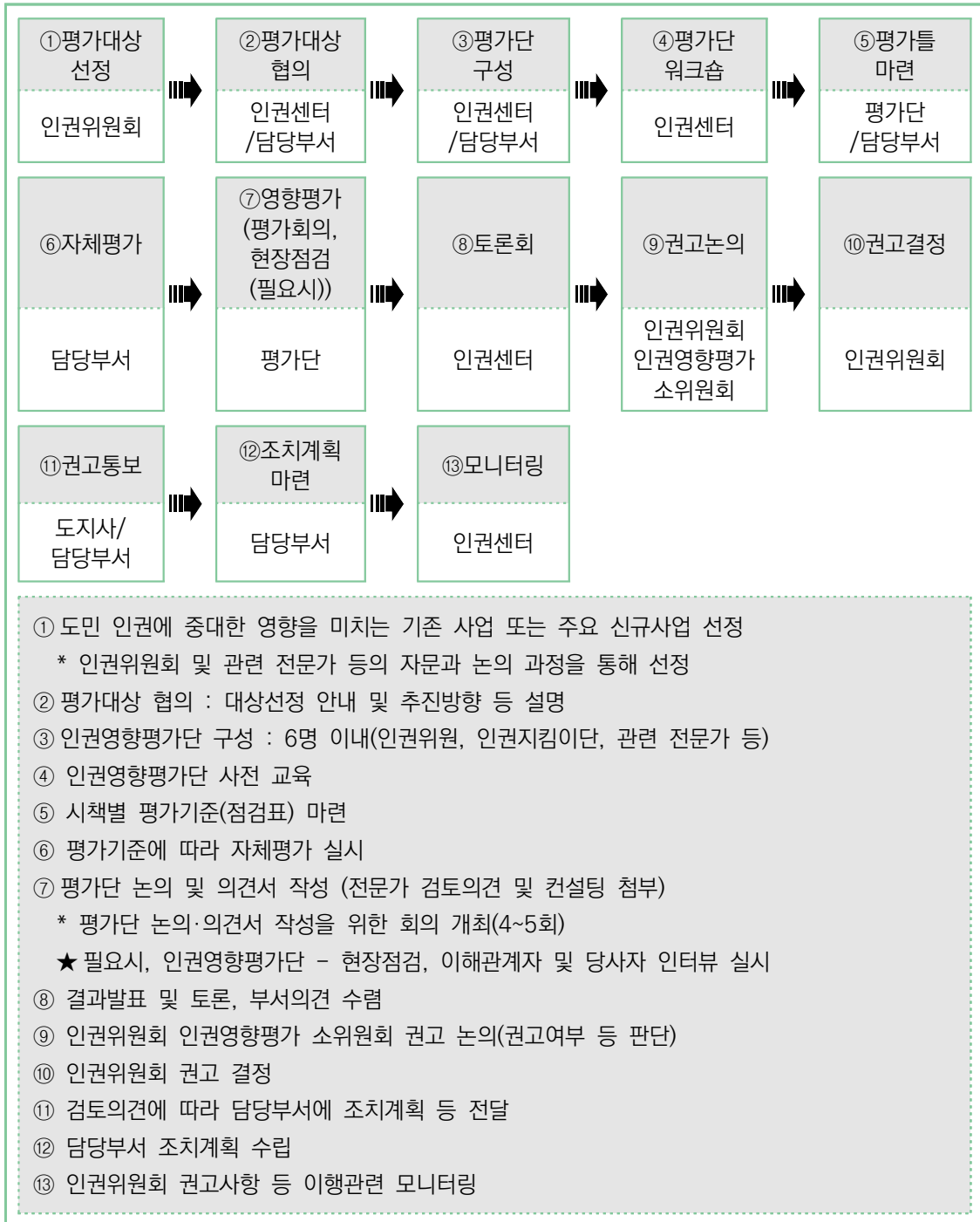
인권영향평가표를 토대로 인권영향평가단 회의를 4~5회 진행하고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에 상정한다. 도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에서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권고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도 인권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도 인권센터에서는 도 인권위원회의 정책 개선 권고 사항을 도 인권위원회 명의로 도지사(담당 부서)에게 통보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의견을 도 인권센터에 제출한다.

➡ 평가대상

- 평가대상 : 인권위원회에서 선정한 도민 인권 증진시책 등

➡ 시책 인권영향평가 평가 흐름



제2장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평가자료 작성 요령

1. 담당부서 자체점검표
2.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3.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부서 의견서



제2장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평가자료 작성 요령

1

담당부서 자체점검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는 충청남도에서 제·개정되는 자치법규를 시행하기 전에 도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활동이다.

자체 점검표 작성을 통해 담당 부서에서는 인권적 관점으로 1차 점검을 하는데 이는 담당 공무원이 자치법규가 도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인권 행정을 끌어내기 위함이 목적이다.

담당 부서에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의뢰하기에 앞서 인권 규범 및 인권 기본원칙과 충돌하는 지 여부를 참고하여 해당 자치법규에 대한 자체 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인권영향평가 자체 점검표는 5개 항목, 12개 질문으로 자치법규 내용이나 용어, 문구의 기본권 제약과 인권침해 여부 등을 점검하는데, 법제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인권적 가치 측면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담당 부서에서 자체 점검표를 통해 개선할 내용을 포함하여 도 인권센터로 제출하면 되고, 도 인권센터에서는 자체점검표를 참고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담당 부서 자체점검표

조례·규칙명	충청남도 000000000 조례(규칙)				
구 분	☐ 제정 ☐ 개정				
관련법령	00법을 제00조,				
입법일정 (예정)	입법예고	20 - -	~	20 - -	(일간)
	법제심사	20 - -	~	20 - -	(기간중 예정)
붙임자료	필수자료	조례·규칙안 및 방침자료, 점검표, 관련규정(고시, 훈령, 지침 등)			
	기타자료				

※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질문	응답	자체개선 (예로 체크한 경우)
기본권 제약	관련조항이 국내외 인권규범 및 인권기본원칙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제개정안 : *수정안:
	도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제개정안 : *수정안: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상위법 등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제개정안 : *수정안:
	관련조항의 표현과 내용이 전반적으로 일반 시민의 수준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되고 알 수 있는 문구인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제개정안 : *수정안:
인권 침해	관련조항으로 사회적 소수자/약자에게 어떤 침해(사실상의 침해를 포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제개정안 : *수정안:
	관련조항에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규정이 포함되어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제개정안 : *수정안:
	관련조항에서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표현이나 내용이 사용되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제개정안 : *수정안:
구제 수단	관련조항에 사회적 약자의 다양성과 차이를 고려하고 이를 반영하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제개정안 : *수정안:
	관련조항으로 침해를 받을 경우 이와 관련한 개인이나 집단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제개정안 : *수정안:
공개	제·개정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도민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공개 및 제공되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제개정안 : *수정안:
참여	제·개정 과정에서 도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보장되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제개정안 : *수정안:
	위원회 등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 등 다양성과 차이를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제개정안 : *수정안:

작성자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번호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자체점검표 작성 참조사항

구 분	검 토 내 용	
기본권 제약	인권규범 및 인권기본원칙과 충돌하는지 여부 검토 - 세계인권 선언 등 고려(http://edu.humanrights.go.kr/academy/eduinfo/worldHnrtList.do)	
	기본적 인권의 제한 또는 침해 요소가 있는지 여부 검토	
	인권분야	세 부 내 용
	민주적 참여권	행정정보에 대해 알 권리 도에 설명을 요구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주거권	건강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 적절한 대책없는 강제퇴거 금지
	교육권	교육에 적합한 시설과 환경에서 생애주기별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
	건강권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 질병이나 병력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안전하게 먹을 권리 감염병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
	문화권	공공시설에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하여 표현, 창작할 권리
	안전권	재난 및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보행 및 교통에서 안전할 권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폭력에서 보호받을 권리
	환경권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공해, 소음 등에서 보호받을 권리
	이동권 접근권	자기 의사에 따라 이동할 권리 공공 시설이나 행사에서 장애나 신체의 불편 여부와 관계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권리
	노동권	차별없이 공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노동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개인정보 보호권	개인정보의 보호(사적정보 처리의 자기결정권) 사생활이 보호받을 권리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나 난해한 표현을 사용하여 일반도민의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렵게 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추상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를 확인 - 불허가 기준으로 '공익', 제한요건으로 '공공의 안전' 등		

구 분	검 토 내 용
인권 침해	인권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요소가 있는지 검토 - 어린이, 청소년, 여성, 비혼모, 장애인, 노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병력이 있는 사람, 비정규노동자, 생활보호대상자, 전과자 등
	‘정상인, 정신병자 등’ 인권침해적 용어나, 특정집단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 검토
구제 수단	사회적 약자의 다양성과 차이를 고려하여 반영하였는지 여부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급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의 현실과 요구를 파악하고, 반영하였는지 여부 - 인권통계 및 인권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
	제·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 - 이의신청 절차 마련
공개	관련 정보가 이해관계자 및 시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되었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및 시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는지 여부
참여	위원회 등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비율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 위촉직은 한 쪽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위원회 등 구성에 있어서 특정사람이나 특정집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여부

2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작성은 담당 부서의 자체 평가표를 검토하고, 인권의 제한 또는 침해 요소가 있는 지 여부 등을 판단한 후 타 지자체 조례와의 교차 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 작성된다.

도 인권센터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개선 권고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고, 담당 부서와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권고는 ‘조문 내용 수정’, ‘용어 수정’, ‘조항 수정’, ‘부적절한 표현 삭제’ 등을 개선 권고 사유와 함께 통보하게 된다.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 조례(규칙) 제(개)정안		
입안주무부서	○○○○과	결과 통보일	202○. . .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제○조(자원순환 성과관리) 도지사는 법 제○조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인 최종처분율 2.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순환이용량의 비율인 순환이용률 (예시)	[권고내용] 조항 추가 권고 제○조(자원순환 성과관리)에 명시된 각호의 ‘폐기물에 관한 적용대상’ 조항 추가 (예시) [개선권고 사유] - 환경부 지침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적용대상 폐기물)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폐기물을 1천 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명시하고 있음 - 타 광역지자체(○○○도, ○○○도, ○○도) 자원순환 기본조례에서도 환경부 지침에 따라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조문이 추가되어있음 - 따라서 제○조(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항에 대한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헌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폐기물에 관한 적용대상 조항’을 추가할 것을 권고함 (예시)		

작성자	부서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

3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부서 의견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는 인권영향평가의 기준 등을 통해 점검하고 사전 협의를 하여 통지하기 때문에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에서는 도 인권센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부서 의견서를 작성한다.

부서 의견서에는 수용, 부분수용, 불수용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고 부분수용, 불수용 시 그 사유를 합리적으로 의견 제시하여 도 인권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서 의견이 불수용이면 도 인권센터에서는 그 결과를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권고 여부를 논의하고 원안동의 혹은 재(再) 개선 권고를 하게 된다.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부서 의견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에 대한 부서 의견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 조례(규칙) 제(개)정안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수용 여부	부분수용 및 불수용 시 부서 의견	
제○조(자원순환 성과관리) 도지사는 법 제○조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인 최종처분율 2.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순환이용량의 비율인 순환이용률 (예시)	[권고내용] 조항추가 권고 제○조(자원순환 성과관리)에 명시된 각호의 ‘폐기물에 관한 적용대상’ 조항추가 (예시) [개선권고 사유] - 환경부 지침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적용대상 폐기물)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폐기물을 1천 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명시하고 있음 - 타 광역지자체(○○○도, ○○○도, ○○도) 자원순환 기본조례에서도 환경부 지침에 따라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조문이 추가되어 있음 - 따라서 제○조(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항에 대한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헌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폐기물에 관한 적용대상 조항’을 추가할 것을 권고함 (예시)	☒ 수용 ☐ 부분수용 ☐ 불수용		

작성 자	부서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

제3장

2022 충청남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1. 평가 개요
2. 평가 기준
3. 추진 현황
4.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개선 권고 분류
5.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추진 실적



1 평가 개요

- 평가 대상 : 제·개정 추진하는 모든 조례·규칙(의원 발의 제외)
- 평가 시기 : 법제심사 전
- 평가 내용 : 자치법규 제·개정 시 도민에게 미칠 인권침해와 차별가능성 등 분석 평가

2 평가 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기본권 제약	관련 조항이 국내외 인권 규범 및 인권 기본원칙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가?
	도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상위법 등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관련 조항의 표현과 내용이 전반적으로 일반 시민의 수준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되고 알 수 있는 문구인가?
인권 침해	관련 조항으로 사회적 소수자/약자에게 어떤 침해 (사실상의 침해를 포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관련 조항에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규정이 포함되어 있는가?
	관련 조항에서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표현이나 내용이 사용되고 있는가?
구제 수단	관련 조항에 사회적 약자의 다양성과 차이를 고려하고 이를 반영하고 있는가?
	관련 조항으로 침해를 받을 경우 이와 관련한 개인이나 집단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가?
공개	제·개정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도민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공개 및 제공되었는가?
참여	제·개정 과정에서 도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보장되었는가?
	위원회 등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 등 다양성과 차이를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가?

3 추진 현황

가. 인권영향평가 실시 현황

2022년 자치법규 제·개정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의뢰한 119개의 조례나 규칙 등에 대해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 중 조례는 87개, 규칙은 19개, 규정은 9개, 지침은 4개였으며 제·개정 여부는 제정이 14개, 개정이 105개였다.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대상 분류(2022)

	계	제정	개정
조례	78	9	78
규칙	19	2	17
규정	9	2	7
지침	4	1	3
계	119	14	105

나. 개선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

평가 결과 개선 권고된 44개 사안에 대해 결과 통보 후 부서 의견을 회신한 결과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부분수용 하였고, 나머지 43개 권고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하였다.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개선 권고 수용 여부(2022)

심의건수	원안동의	개선 권고					
		소계	수용	부분수용	불수용	진행중	기타
119	75	44	43	1	-	-	-

➡ 자치법규별 개선 권고 내용 및 조치 결과(2022)

연번	조례명	주요내용	조치결과
1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민원실에서 도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서류 및 장비 등 내용을 포함한 조항 신설	수용
2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제5조(위원의 해촉)에서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수정하고, 그 사유를 위원에게 알리는 조항 추가 - 구체적 해촉사유에는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를 추가하여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고, 해촉 시에는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 알권리도 보장해야 함	수용
3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78조(위원회 구성)제1항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단서 조항 추가	수용
4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 제16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에 조항 제목과 내용에 포함된 “양여”를 “무상양도”로 용어 수정	수용
5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제13조(자치회 임원의 임무) 제1항 “학생장을 보좌하며”문구를 삭제 - 보좌는 “상관을 도와 일을 처리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반장과 학생장은 자치회 임원으로서 서로 협력해야 하는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보좌”라는 표현은 자치회 운영 취지에 맞지 않음	수용
		- 제13조(자치회 임원의 임무) 제1항 “유고”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수정	수용
		- 제37조(모범답안의 공개)에서 모범답안 공개 시 답안 작성자의 공개의사를 묻는 절차 혹은 평가 전 모범답안 공개 동의 절차 마련	수용
		- 제48조(구성 등) 제1항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 추가	수용

연번	조례명	주요내용	조치결과
6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제1항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 추가	수용
7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제17조(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의 처리)에 재직기간별 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에 따라 휴가(연가)를 당겨쓸 수 있도록 내용 수정	수용
8	충청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	- 조례에 정의 조항을 추가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용어 뜻을 추가(신설)	수용
9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제12조(구성)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 추가	수용
10	충남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훈령안	- 제5조(출입 제한) 제1항에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를 ‘화재 위험 물품이나 흉기를 소지한 자’로 수정할 것을 권고	수용
11	충청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지침 일부 개정안	- 제3조(충청남도 직장운동경기부의 구성) 제3항에 ‘단장을 보좌하며’와 제6항 ‘감독을 보좌하며’를 삭제할 것을 권고	수용
12	충청남도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 운영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 제12조(항계 내 선박의 안전운항), <별표 1> 주요기본 및 기능시설에 포함된 ‘항계’에 대한 정의를 제3조(용어의 정의)에 추가 - 제13조(예선사용)제①항, 제②항, 제14조(선박의 계선)제②항에 포함된 ‘예선’에 대한 정의를 제3조(용어의 정의)에 추가 - 제3조(용어의 정의)제2호, <별표 2> 항만시설별 이용선박 및 화물에 포함된 ‘돌핀’에 대한 정의를 제3조(용어의 정의)에 추가 - <별표 1> 주요기본 및 기능시설에 포함된 ‘요박지’에 대한 정의를 제3조(용어의 정의)에 추가	수용

연번	조례명	주요내용	조치결과
13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9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지역 슬로(slow)공동체’에 대한 설명 추가	부분수용 * 공동체 역할을 부여한 용어로 정비
14	충청남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안(제정안)	- 제20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 추가	수용
15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항 제2호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7, 제107조에 따라 공정한 용역체결을 위해 친족의 범위를 넓게 명시	수용
		- 제5조(용역심의위원회) 제2항에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의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성별 비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수용
16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호 ‘심신장애’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수정	수용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를 삭제할 것을 권고	수용
17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14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항에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의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성별 비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수용
		- 별지 제1호 ‘개발예정지구에 관한 조사서’에 ‘지장물’, ‘간선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	수용
		- 별지 제5호 ‘검사공무원 증표’에 ‘주민등록 번호’삭제 권고	
18	충청남도인재개발원의 충청남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안	- 제7조(지원) 제1항에 충남도민의 교육훈련 지원에 대한 기준 마련	수용
19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13조(심의회의 구성)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 추가	수용

연번	조례명	주요내용	조치결과
20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22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제1항 제1호에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정의 추가	수용
21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과 제10조의3(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제2항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라는 비율 구체적 명시	수용
22	충남 창작스튜디오 운영 규칙 제정안	- 제14조(입주작가 지원 관리)에 작업실 이용률에 대한 기준 제시 필요	수용
23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안	- 제13조(위원의 해촉) '심신장애'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수정	수용
24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7조(자치안전실)에 '도민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내용을 추가할 것을 권고 - 제7조(자치안전실)에 '남북교류 협력사업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내용을 추가할 것을 권고	수용
25	충청남도 환경정화운반선 관리·운영 규정 제정안	- 제13조(안전관리) 제1항 제3호에 포함된 '입거'를 제2조(용어의 정의)에 추가	수용
		- 제17조(복무) 제3호에 포함된 '숙구'를 제2조(용어의 정의)에 추가	수용
26	충청남도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제정안	- 제5조(사용자 준수사항 등) 제1항제1호 본문에 사전고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에는 사후고지를 추가할 것을 권고함	수용
27	충청남도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 훈령안	- 제7조(위원의 해촉) 제1항 '심신장애'를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수정	수용
28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규칙안	- [별지 제1호] 농어촌진흥기금융자신청서 4. 영농(어)경력에서 요구하는 '최종학력' 삭제	수용
29	충청남도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제3조(운영의 기본원칙) 제5호의 '평가의 원칙'을 누구나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	수용

연번	조례명	주요내용	조치결과
30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 제1조(목적), 제2조(정의)제2호, 제3호, 제4호, 제5조(지원사항)제1항, 제3호, 제6호에 민원 처리 담당자가 입는 피해 내용으로 '성희롱' 내용 추가	수용
		-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제1항제9호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스피드게이트, 출입문 등)은 민원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할 것을 권고	수용
31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항에 명시된 위원회의 기능이 통폐합될 경우 조례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하지 않고 현행 유지 권고	수용
32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9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제2항에 발달 장애인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위원 참여를 보장하도록 내용을 추가할 것을 권고	수용
33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 제24조(설치 및 구성) 제2항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단서 조항 추가	수용
34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 제5조(위원장의 직무)제2항중 ‘위원장을 보좌하고’ 삭제	수용
35	충청남도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지원 조례	-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2항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단서 조항 추가	수용
		- 제14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제3항 ‘위원장을 보좌하며’ 삭제 -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시 위원장을 대행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상하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부위원장이 위원장 보좌 역할을 할 필요는 없음	수용

연번	조례명	주요내용	조치결과
36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 제7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제2항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단서 조항 추가	수용
37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3조(구성)제3항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단서 조항 추가	수용
		- 제17조(위원장 등의 책무) 제2항에 명시된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삭제	수용
38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2항에 명시된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삭제	수용
39	충청남도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4조(명장위원회 운영) 제2항에 명시된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삭제	수용
40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5조(협의)제1항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단서 조항 추가	수용
41	충청남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5조(검증위원회의 구성)과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단서 조항 추가	수용
42	충청남도 주소정보 조례	-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제1항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단서 조항 추가	수용
43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 제14조의2(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단서 조항 추가	수용
44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위원회를 명시하는 조항 추가	수용

4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개선 권고 분류

평가 결과 개선 권고된 44개 자치법규의 54건의 권고내용을 살펴보면, 기본권 제약 분야에서 정의 및 내용 추가 13건, 용어 수정 3건, 자기결정권 및 개인정보보호 2건, 인권침해 분야에서 차별적 용어 사용 4건이었고, 성별 공평성 1건, 특정 성별 편중 방지 1건, 구제 수단 분야 1건, 참여 분야 1건이었다.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개선 권고 분류(인권분야별)

분 야		내 용	비 고
기본권 제약	가. 도민의 알권리 보장 - 정의 및 내용 추가·수정 - 용어수정	1. '정보공개 청구 효율성 제고' 관련 내용 추가	
		2. '항계', '예산', '돌핀', '묘박지'의 정의 추가	
		3. '지역 슬로(slow)공동체'의 설명 추가	
		4.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정의 추가	
		5. '입주작가의 작업실 이용률'에 대한 기준 제시	
		6. 자치안전실이 관장하는 업무에 '도민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 협력사업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추가	
		7. '입거', '숙구'의 정의 추가	
		8. 조례에 정의 조항 신설하여 '공유수면'의 정의 추가	
		9. '지장물', '간선시설'에 대한 정의 추가 혹은 쉬운 표현으로 수정	
		10. 위원의 해촉사유 구체적 명시 및 당사자 알림 내용 명시	
		11. 휴가(연가)일수 당겨쓰기 조항으로 내용 수정	
		12. 민원처리 담당자가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항에 추가	
		13. 민원인 출입 제한 내용 삭제	
		14. '유고'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수정	
		15. '평가의 원칙'을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	
		16. '양여'를 '무상양도'로 용어 수정	

분 야		내 용	비 고
인권 침해	나. 자기결정권 및 개인정보 보호	1. 모범답안 공개 시 답안 작성자의 동의 절차 마련	
		2. 검사공무원 증표에 '주민등록번호' 삭제	
	다. 차별적 용어 사용	1. 신청서 요구사항 '최종학력' 삭제	
		2. '심신장애'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수정	3건
		3. '보좌' 용어 삭제	8건
		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를 '화재위험 물품이나 흉기를 소지한 자'로 수정	
	라. 성별 공평성	1. 공정한 용역체결을 위해 친족의 범위를 넓게 명시	
	마. 특정 성별 편중 방지	1. 성비 균형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17건
	구제 수단	다. 구제수단	1. 녹화, 녹음 시 '구두로' 고지하고, 긴급한 경우 사후라도 고지하도록 수정
	참여	사. 도민참여 기준 미비	1. 도민의 교육훈련 지원 기준 마련
			2. 운영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는 조항 명시
			3. 발달장애인 이해관계자 위원 참여 보장
			4. 위원회의 기능 현행 유지

기본권 제약

가. 도민의 알권리 보장(정의 및 내용 추가, 용어 수정)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자의적 해석 방지를 위해 용어 정의 추가, 조문 내용 및 용어 수정 등을 권고했다.

1) '정보공개 청구 효율성 제고' 관련 내용 추가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조 항 신 설	민원실에서 도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서류 및 장비 등 내용을 포함한 조항 신설

- ◆ 도민이 행정 의사 결정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어야 함
- ◆ 해당 조례 시행규칙은 안내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식이나 정보목록 등을 비치하거나 구비해야 하는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도민이 알권리(정보접근권)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함
- ◆ 총괄부서와 처리부서에서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대부분 온라인 혹은 전화로 이뤄지고 있고, 대부분의 방문 민원 업무는 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현실적 특성을 반영하여 민원실을 한정하여 정보공개청구 서식, 정보공개편람, 당해 기관의 공개 대상 정보목록, 당해 기관의 공표 대상 행정정보 목록 등을 비치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

2) '항계', '예선', '돌핀', '묘박지'의 정의 추가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지방관리구역항 항만시설 운영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 제3조(용어의 정의)제2호 - 제12조(항계 내 선박의 안전운항) - 제14조(선박의 계선)제②항 - 〈별표 1〉, 〈별표 2〉	[권고내용] 용어의 정의 추가 ▶ '항계', '예선', '돌핀', '묘박지'의 정의 추가

- ◆ 자치법규는 일반 도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도민의 정보접근권 및 알권리를 지켜야 함
- ◆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는 우리말이나 일상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용어, 더 쉬운 한자어 등으로 순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 해당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화(滯貨), 항계(港界), 예선(曳船) 접안(接岸), 묘박지(錨泊地), 돌핀(항만법상 계선말뚝)은 도민의 관점에서 누구나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라고 판단됨
- ◆ 따라서 해당 단어들에 대해 제3조(용어의 정의)에 추가하여 도민의 정보접근권 및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

3) '지역 슬로(slow)공동체'의 설명 추가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도지사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3. 지역 슬로(slow)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 제19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에 '지역 슬로(slow)공동체'에 대한 설명 추가

- ◆ '지역 슬로(slow)공동체'의 경우 영어 표기를 하였지만, 영어를 읽지 못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도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 '지역 슬로 공동체'의 의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조항이나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 도민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 '지역 슬로(slow) 공동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도민의 정보접근권 및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

4)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정의 추가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2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① 영 제 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 건축물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	- 제22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제1항 제1호 에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정의 추가

- ◆ 해당 조례에서는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있지 않은데다 그 기준을 알아볼 수 있을 만한 단서가 존재하지 않음

- ◆ 이는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2조 제1호에 ‘기존무허가건축물’을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조례 제2조(정의)에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용어 뜻을 설명하여 도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

5) ‘입주작가의 작업실 이용률’에 대한 기준 제시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남 창작스튜디오 운영 규칙 제정안〉	
제14조(입주작가 지원 관리) 도지사는 개인 작업실 이용률 등이 저조한 작가에 대하여는 스튜디오 입주작가로서의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4조(입주작가 지원 관리) 에 작업실 이용률에 대한 기준 제시 필요

- ◆ 입주작가의 지원관련 조항에서 ‘개인작업실 이용률 등’으로만 규정할 경우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음
- ◆ 해당 조례는 충남 창작스튜디오에 입주작가를 선정하여 지역중심의 신진 예술가를 양성하기 위한 조례로 입주작가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 없도록 기준 마련이 필요함
- ◆ 예컨대 입주작가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됨
- ◆ 이에, 작업실 이용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권고

6) 자치안전실 관장업무에 ‘도민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 협력사업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추가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조(자치안전실) 자치안전실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생략)	- 제7조(자치안전실)에 ‘도민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 내용을 추가할 것을 권고 - 제7조(자치안전실)에 ‘남북교류 협력사업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내용을 추가할 것을 권고

‘도민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 조항 내용을 추가

- ◆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도민이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담당하는 부서의 존재와 업무의 확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함
- ◆ 하지만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서는 ‘도민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부서에서 관장하는 업무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 인권업무의 존립이 어려워져 도민의 인권 보장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 ◆ 아울러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에는 인권선언의 정신과 가치 실현, 인권 관련 시책 발굴, 인권침해 및 차별 구제, 인권정책 수립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권 업무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 ◆ 이에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서 도지사는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2019년 제2차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5개년)을 시행하여 추진해오고 있음
- ◆ 제2차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연도별 실행계획, 인권정책 이행 및 평가, 제도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기본계획 실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평등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2012. 4. 12.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를 통해 인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장의 책무 명시, 인권전담부서 설치 등을 통해 지역구성원 전체의 인권 보호를 하도록 권고함
- ◆ 2017. 6. 15.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며, 이후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 인권부서 설치 및 인권업무의 확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 ◆ 따라서 제7조(자치안전실)에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내용을 추가할 것을 권고

‘남북교류 협력사업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조항 내용을 추가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지원)에는 지자체의 협력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6조(설치·구성)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음
- ◆ 또한 정부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하에 국내법과 UN난민협약(1951년) 등 국제법에 부합되게 이들을 보호수용하고 있음
- ◆ 1990년부터 민족자존과 평화번영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운영해 온 것은 북한을 적대관계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교류와 협력의 당사자로 인정하는 것이며, 남북한 평화 체제 구축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질서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업무임
- ◆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관련법률과 조례가 있으므로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등에 대한 업무가 필요함
- ◆ 따라서 제7조(자치안전실)에 ‘남북교류 협력사업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내용을 추가할 것을 권고함

7) ‘입거’, ‘속구’의 정의 추가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환경정화운반선 관리·운영 규정 제정안〉	
- 제13조(안전관리) 제1항 제3호 - 제17조(복무) 제3호	제13조(안전관리), 제17조(복무) 조항에 ‘입거’, ‘속구’의 정의 추가

- ◆ 해당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입거(入渠)’, ‘속구(屬具)’는 도민의 관점에서 누구나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라고 판단됨
- ◆ 따라서 해당 단어들에 대해 제2조(용어의 정의)에 추가하여 도민의 정보접근권 및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

8) 조례에 정의 조항 신설하여 ‘공유수면’의 정의 추가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	
(조 항 신 설)	- 조례에 정의조항을 추가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용어 뜻을 추가(신설)

- ◆ 누구나 알권리(정보접근권)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함
- ◆ 해당 조례의 조례명과 조항 및 내용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유수면(公有水面)’은 한자어로서 일반 도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임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공유수면’에 대한 정의를 하여 국민 누구나 법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조례에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공유수면’의 용어 뜻을 설명하여 도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함

9) ‘지장물’, ‘간선시설’에 대한 정의 추가 혹은 쉬운 표현으로 수정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별지 제1호 - 개발예정지구에 관한 조사서	- 별지 제1호 ‘개발예정지구에 관한 조사서’에 ‘지장물’, ‘간선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

- ◆ 해당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장물’ 및 ‘간선시설’은 도민의 관점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판단됨
- ◆ 따라서 해당 단어들에 대해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여 도민의 정보접근권 및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함

10) 위원의 해촉사유 구체적 명시 및 당사자 알림 내용 명시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장의 질병 또는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에서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수정하고, 그 사유를 위원에게 알리는 조항 추가 - 구체적 해촉사유에는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를 추가하여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고, 해촉 시에는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 알권리도 보장해야 함

- ◆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적용을 받아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등 규제개혁을 종합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 질병이나 품위 손상을 해촉 사유로 한다면 재량권을 남용할 여지가 있음
- ◆ 아울러 구체적 해촉 사유에는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를 추가하여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고, 해촉 시에는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 알권리도 보장해야 함
- ◆ 따라서 위원회의 해촉 사유로 인해 불합리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릴 것을 권고함

11) 휴가(연가)당겨쓰기 조항으로 내용 수정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7조(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의 처리) 휴가기간이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본다.	- 제17조(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의 처리) 에 재직기간별 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에 따라 휴가(연가)를 당겨쓸 수 있도록 내용 수정

- ◆ 해당 조례 제17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휴가(연가) 일수를 초과하였을 때 결근으로 본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음

- ◆ 하지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초과하는 경우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재직기간별로 미리 당겨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휴가(연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나 필요로 인해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례에 휴가(연가) 일수를 당겨쓸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함
- ◆ 이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연가일수를 당겨쓸 수 있도록 조항 내용을 수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의 연가 사용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

12) 민원처리 담당자가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항에 추가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폭언, 폭행 관련 내용만 포함된 조항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호, 제3호, 제4호 제5조(지원사항) 제1항, 제3호, 제6호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호, 제3호, 제4호, 제5조(지원사항)제1항, 제3호, 제6호에 민원처리 담당자가 입는 피해 내용으로 ‘성희롱’ 내용 추가

- ◆ 민원인에 의한 폭언·폭행뿐만 아니라 성희롱도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됨
- ◆ 민원인에 의해 성희롱 피해를 입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함
- ◆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도 성희롱 피해를 입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와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
- ◆ 따라서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의 종류에 성희롱을 추가할 것을 권고함

13) 도민의 권리 제한 표현 삭제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1항제9호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스피드게이트, 출입문 등)	-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1항제9호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스피드게이트, 출입문 등)은 민원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할 것을 권고

- ◆ 민원인은 민원 신청을 위하여 사무실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함
- ◆ 민원인이 사무실을 출입할 때 방문 목적이 민원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민원인에게 물어보아야 알 수 있음
- ◆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 설치하는 자유롭게 민원실을 출입할 수 있는 민원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14) ‘유고’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수정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제13조(자치회 임원의 임무) ①항 생략 ② 반장은 학생장을 보좌하며, 학생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자치회 임원의 임무) 제1항 ‘유고’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수정

- ◆ 조례에 포함된 ‘유고(有故)’라는 표현은 사전적 의미로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고, 법제처에서는 ‘유고’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순화하여 법령을 정비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 따라서, 조항 내용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수정하여 도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함

15) ‘평가의 원칙’을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운영의 기본원칙) 5. 평가의 원칙	- 제3조(운영의 기본원칙) 제5호의 ‘평가의 원칙’을 누구나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

- ◆ 제3조(운영의 기본원칙) 제5호에서 규정하는 ‘평가의 원칙’은 다른 호와 다르게 목적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으므로 누구나 알기 어려운 표현이라고 판단됨
- ◆ 따라서 ‘평가의 원칙’을 누구나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

16) ‘양여’를 ‘무상양도’로 용어 수정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16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각 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 제16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에 조항 제목과 내용에 포함된 ‘양여’를 ‘무상양도’로 용어 수정

- ◆ 조례에 포함된 ‘양여(讓與)’는 사전적 의미로 자기의 소유를 남에게 건네준다고 되어 있고, 법제처에서는 ‘양여’를 ‘무상양도’로 순화하여 법령을 정비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 따라서, 조항 내용에 ‘무상양도’ 용어를 사용하여 도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함

기본권 제약

나. 자기 결정권 및 개인정보 보호

도민이 자기 결정권과 개인정보를 침해받지 않도록 추가 및 수정 권고했다.

1) 모범답안 공개 시 답안 작성자의 동의 절차 마련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제37조(모범답안의 공개) 평가 실시 후 필요한 때에는 모범 답안을 게시할 수 있다.	- 제37조(모범답안의 공개) 에서 모범답안 공개 시 답안 작성자의 공개의사를 묻는 절차 혹은 평가 전 모범답안 공개 동의 절차 마련

- ◆ 모범답안은 작성자가 평가를 위해 만들어내는 답안일 뿐 공개를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님
- ◆ 답안을 공개 시 사전에 공개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치거나 평가 전 모범답안의 공개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사적정보 처리의 자기결정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할 것을 권고함

2) 검사공무원 증표에 ‘주민등록번호’ 삭제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별지 제5호 - 검사공무원 증표	- 별지 제5호 ‘검사공무원 증표’에 ‘주민등록번호’ 삭제 권고

- ◆ 검사 공무원 증표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수 있고,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음
- ◆ 하지만 검사 공무원 증표를 제시받는 관계인에게 검사공무원의 중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제공되어야 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됨
- ◆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1항 제2호에서는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
- ◆ 이에 검사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지 제5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다. 차별적 용어 사용

‘최종학력’, ‘심신장애’, ‘보좌’,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등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용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1) 신청서 요구사항에 ‘최종학력’ 삭제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규칙안〉	
[별지 제1호] 농어촌진흥기금융자신청서 - 4. 영농(어)경력	- [별지 제1호] 농어촌진흥기금융자신청서 4. 영농(어)경력에서 요구하는 ‘최종학력’ 삭제

◆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도 평등권 침해의 차별 사유 중 하나로 학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학력이 아니라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비하도록 권고한 사례 있음

◆ 따라서 ‘최종학력’은 농어업인들이 농어촌진흥기금융자 신청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지 제1호] 농어촌진흥기금융자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최종학력’을 삭제 권고함

2) ‘심신장애’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수정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안〉	
제13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13조(위원의 해촉) ‘심신장애’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수정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 훈령안〉	
제7조(위원의 해촉)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7조(위원의 해촉) 제1항 ‘심신장애’를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수정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호 ‘심신장애’를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수정

- ◆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유는 다양하나 자칫 장애를 가진 사람만 해촉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며, 장애 유무가 직무수행과 관련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부추길 수 있음
- ◆ 아울러 1989년 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며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
- ◆ 이에,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수정하여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직무수행 여부를 폭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할 것을 권고함

3) ‘보좌’ 용어 삭제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제13조(자치회 임원의 임무) ①항 생략 ② 반장은 학생장을 보좌하며, 학생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자치회 임원의 임무) 제1항 ‘학생장을 보좌하며’ 문구를 삭제 - 보좌는 ‘상관을 도와 일을 처리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반장과 학생장은 자치회 임원으로 서로 협력해야 하는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보좌’라는 표현은 자치회 운영 취지에 맞지 않음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지침 일부 개정안〉	
제3조(충청남도 직장운동경기부의 구성)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결위되거나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⑥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여 선수의 트레이닝을 담당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 제3조(충청남도 직장운동경기부의 구성) 제3항에 ‘단장을 보좌하며’와 제6항 ‘감독을 보좌하며’를 삭제할 것을 권고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를 삭제할 것을 권고
〈충청남도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지원 조례〉	
제14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제3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제3항 ‘위원장을 보좌하며’삭제 -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시 위원장을 대행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상하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부위원장이 위원장 보좌 역할을 할 필요는 없음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중 ‘위원장을 보좌하고’ 삭제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구성)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실장이 된다.	- 제17조(위원장 등의 책무) 제2항에 명시된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삭제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2항에 명시된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삭제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조례〉	
제14조(명장위원회 운영)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명장위원회 운영) 제2항에 명시된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삭제

- ◆ 보좌(輔佐)는 ‘상관을 도와 일을 처리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보필(輔弼)은 ‘윗사람의 일을 도움’이라는 뜻으로 서로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음
-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으로서 서로 협력하는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보좌’라는 표현은 위원회 등의 취지에 맞지 않음
- ◆ 또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리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나 협력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 따라서 ‘위원장을 보좌하며’, ‘단장을 보좌하며’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 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를 ‘화재위험이나 물품을 소지한 자’로 수정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남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제5조(출입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의 출입을 제한한다. 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 제5조(출입 제한) 제1항에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를 ‘화재위험 물품이나 흉기를 소지한 자’로 수정할 것을 권고

- ◆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자칫 도서관 이용자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출입 제한의 사유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정보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해야 함
- ◆ 아울러 이용자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화재위험 물품이나 흉기를 소지한 자’로 수정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인권침해

라. 성별 공평성

도민 누구나 공정한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1) 공정한 용역체결을 위해 친족의 범위를 넓게 명시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항 제2호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7, 제107조에 따라 공정한 용역체결을 위해 친족의 범위를 넓게 명시

- ◆ 위원회는 용역의 필요성·타당성·유사 중복성과 계약 방법의 적정성, 용역 결과 평가, 점검 등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용역 기관과 친족 등의 긴밀한 관계가 아니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7 및 제107조에 따르면 위원의 제척사유로 ‘위원이 해당 부정당업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67조~제777조에는 친족의 정의 및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 위원회의 위원과 용역업체의 관계가 친족일 경우 업체 선정을 비롯하여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 따라서 조례 제9조 제1항 제2호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7, 제107조에 따라 공정한 용역체결을 위해 친족의 범위를 넓게 명시할 것을 권고

인권침해

마. 특정 성별 편중 방지

특정 성별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율이 명시되지 않아 비율 명시를 개선권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특정 성별이 배제되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할 것을 권고했다.

1) 성비 균형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8조(위원회 구성) ① 조직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⑥항 생략)	- 제78조(위원회 구성) 제1항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단서 조항 추가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제4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④항 생략	- 제48조(구성 등) 제1항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 추가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④항 생략)	-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제1항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 추가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2조(구성) ①~④항 생략	- 제12조(구성) 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 추가
〈충청남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제정안)〉	
제20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⑥항 생략	- 제20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 추가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용역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 제5조(용역심의위원회) 제2항에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의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성별 비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4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② 법 제27조제4항제1호의 민간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항에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의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성별 비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3조(심의회의 구성) 이하생략	- 제13조(심의회의 구성) 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 추가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30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0조의3(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② 추진단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1. 남북교류협력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북교류협력분야 등에 관련 있는 기관, 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3. 위원회 위원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과 제10조의3(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제2항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라는 비율 구체적 명시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제24조(설치 및 구성) ②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기후환경분과 위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제24조(설치 및 구성) 제2항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단서 조항 추가
〈충청남도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지원 조례〉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항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단서 조항 추가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7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7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제2항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단서 조항 추가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구성)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실장이 된다.	- 제13조(구성)제3항 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단서 조항 추가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제5조(협의)제1항 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단서 조항 추가
〈충청남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검증위원회의 구성) 생략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생략	- 제5조(검증위원회의 구성) 과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단서 조항 추가
〈충청남도 주소정보 조례〉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충청남도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	-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1항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단서 조항 추가

해당조항	권고내용
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제14조의2(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④ 자문위원은 도시계획, 교통, 건축, 환경, 조경, 공공디자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제14조의2(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단서 조항 추가

-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특정 성별이 배제되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임
- ◆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구제수단

바. 구제수단

도민이 민원 상담 시 민원 처리 담당자로부터 녹화 또는 녹음의 시작, 종료에 대한 사실을 고지받을 수 있도록 내용 추가를 권고했다.

- 1) 녹화, 녹음 시 ‘구두로’ 고지하고, 긴급한 경우 사후라도 고지하도록 수정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제정안〉	
제5조(사용자 준수사항 등) 제1항 1. 녹화 또는 녹음 시작과 종료 전에 녹화 또는 녹	- 제5조(사용자 준수사항 등) 제1항제1호 본문에 사전고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제5

해당조항	권고내용
음 시작 및 종료 사실을 고지. 다만, 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등록할 때에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조제1항제1호 단서에는 사후고지를 추가할 것을 권고함

- ◆ 민원인이 공무원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공무원의 안전 및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용 영상녹음 장비를 운영할 수 있음
- ◆ 하지만 휴대용 영상녹음 장비를 사용하면 민원인의 개인정보와 초상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민원인에게 녹음 및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함.
- ◆ 제5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사전고지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고지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사전고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 또한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 조항은 긴급한 경우 사전고지를 면제하고 대신 사전고지 면제 사유를 기록하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긴급한 상황에서 사전고지 없이 민원인을 촬영한 사실을 민원인에게 사후에라도 고지하지 않는다면 공권력의 남용을 제한할 수 없게 됨
- ◆ 이에, 제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사전고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는 사후고지를 추가할 것을 권고함

참 여

사. 도민참여 기준 미비

도민이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제약이 없도록 지원 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1) 도민의 교육훈련 지원 기준 마련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인재개발원의 충청남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안〉	
제7조(지원) ① 원장은 도민등 중에서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재비 및 실습체험비 2. 현장견학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지원) 제1항에 충남도민의 교육훈련 지원에 대한 기준 마련

- ◆ 무상교육 대상을 정할 때 기준이 없다면 원장이 재량권을 남용할 여지가 있으며, 그 기준에 대해 도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됨
- ◆ 따라서 충남 도민의 교육훈련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차별에 대한 예방과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함

2) 운영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는 조항 명시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운영위원회 관련 내용 일괄 삭제(생략)	-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위원회를 명시하는 조항 추가

- ◆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에서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면 운영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는 다른 위원회를 명시해주어야 함
- ◆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에 운영위원회를 삭제하는 대신 어떤 위원회가 대행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권고

3) 발달장애인 이해관계자 위원 참여 보장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9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제2항에 발달장애인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위원 참여를 보장 하도록 내용을 추가할 것을 권고

- ◆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폐합은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이므로 기존 위원회의 기능으로 명시된 것은 그대로 두고 단지 그러한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고 표기해야 함
- ◆ 그런데 기존 위원회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행하는 위원회 위원 구성만으로는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경우엔 기존 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 ◆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위원 참여를 보장해야 함

4) 위원회 기능 현행 유지

해당조항	권고내용
〈충청남도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제정안〉	
[개정안]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현행]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	-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항에 명시된 위원회의 기능이 통폐합될 경우 조례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하지 않고 현행 유지 권고

해당조항	권고내용
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 2. 센터 사업의 예산지원 3. 센터의 운영사업 평가 4.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안건	

- ◆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폐합은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이므로 기존 위원회의 기능으로 명시된 것은 그대로 두고 단지 그러한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고 표기해야 함
- ◆ 또한 기존 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행하는 위원회는 조례상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하나의 문구로 통칭하는 것은 대행하는 위원회가 조례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 따라서, 기존 위원회의 기능은 그대로 명시할 것을 권고함

5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추진 실적(2022)

연번	해당부서	검토 조례안	검토결과
1월			
1	투자입지과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유공자 성과금 등 운영지침 전부개정 훈령안)	원안동의
2	공동체정책과	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동의
3	운영지원과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개선권고
4	미래성장과	충청남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원안동의
5	미래성장과	충청남도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원안동의
6	교육법무담당관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선권고
2월			
7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규칙 및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8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선권고
9	운영지원과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안	개선권고
3월			
10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원안동의
11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개선권고
12	세정과	충청남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원안동의
13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원안동의
4월			
14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선권고
15	운영지원과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선권고
16	운영지원과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17	해운항만과	충청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	개선권고
18	정보화담당관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개선권고
19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시군의회의 의원 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동의

연번	해당부서	검토 조례안	검토결과
5월			
20	관광진흥과	충청남도 예비 관광특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원안동의
21	운영지원과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동의
22	충남도서관	충남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개선권고
23	체육진흥과	충청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개선권고
24	해양정책과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원안동의
25	해양항만과	충청남도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개선권고
26	기후환경정책과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분수용
6월			
27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충청남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제정안)	개선권고
28	투자입지과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7월			
29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원안동의
30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충청남도 청렴서약제 운영규정 전부개정 규정안	원안동의
31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동의
32	정책기획관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선권고
33	교육법무담당관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117개 조례의 일부개정제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34	운영지원과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원안동의
35	균형발전과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개선권고
36	혁신도시정책과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개선권고
37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원안동의
38	토지관리과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동의
39	노인복지과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동의
8월			
40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충청남도인재개발원의 충청남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운영 조례 제정안	개선권고
41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선권고
42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충청남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원안동의

연번	해당부서	검토 조례안	검토결과
9월			
43	건축도시과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선권고
44	세정과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원안동의
45	세정과	도세 징수 조례	원안동의
46	세정과	도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원안동의
47	세정과	도세 조례	원안동의
48	세정과	도세 감면 조례	원안동의
49	농업정책과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동의
50	투자입지과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동의
51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선권고
52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동의
53	문화정책과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안	개선권고
54	문화정책과	충남 창작스튜디오 운영 규칙 제정안	개선권고
55	공동체정책과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원안동의
56	경제소상공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동의
10월			
57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충청남도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운영지침 전부 개정 지침안	원안동의
58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선권고
11월			
59	해양정책과	충청남도 환경정화운반선 관리·운영 규정 제정안	개선권고
60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제정안	개선권고
61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 훈령안	개선권고
62	교통정책과	충청남도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동의
12월			
63	교통정책과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64	119종합상황실	충청남도 119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전부개정 훈령안	원안동의
65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원안동의
66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연번	해당부서	검토 조례안	검토결과
67	미래성장과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68	예산담당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69	정책기획관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원안동의
70	정책기획관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원안동의
71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원안동의
72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원안동의
73	안전정책과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74	교육법무담당관	충청남도 소송사무 처리 예규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75	농업정책과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규칙안	개선권고
76	출산보육정책과	충청남도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개선권고
77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개선권고
78	자치행정과	공무직 정원관리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	원안동의
79	출산보육정책과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개선권고
80	출산보육정책과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선권고
81	기후환경정책과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개선권고
82	기후환경정책과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83	해양정책과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84	해양정책과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85	해양정책과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86	해양정책과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원안동의
87	해양정책과	충청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조례	원안동의
88	문화정책과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	원안동의
89	문화정책과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개선권고
90	문화정책과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91	문화정책과	충청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92	문화정책과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원안동의
93	문화정책과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보호 및 환수활동지원 조례	개선권고
94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95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원안동의

연번	해당부서	검토 조례안	검토결과
96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원안동의
97	농업정책과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원안동의
98	농업정책과	충청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99	농업정책과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	원안동의
100	농업정책과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101	농업정책과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개선권고
102	농업정책과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103	경제소상공과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원안동의
104	경제소상공과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105	경제소상공과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선권고
106	경제소상공과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107	경제소상공과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원안동의
108	경제소상공과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선권고
109	경제소상공과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110	경제소상공과	충청남도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조례	개선권고
111	건설정책과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선권고
112	건설정책과	충청남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개선권고
113	건설정책과	충청남도 주소정보 조례	개선권고
114	건설정책과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개선권고
115	공동체정책과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116	공동체정책과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117	공동체정책과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원안동의
118	공동체정책과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119	충남도립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선권고

제4장

2022 충청남도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

1. 평가 개요
2. 추진 경과
3.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
(기업과 인권 체계 건인 및 지원)
4.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
(이주배경 아동의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5.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
(주민건강영향조사의 확대와 강화)



1 평가 개요

- 대상 :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시책 등 3개 분야

인권영향평가 평가 대상	담당 부서
기업과 인권 체계 견인 및 지원	예산담당관 공공기관팀
이주배경 아동의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출산보육정책과 보육지원팀
주민건강영향조사의 확대와 강화	푸른하늘기획과 생활환경보건팀

- 시 기 : 2022년 3월 ~ 12월
- 방 법 : 각 시책별 평가단 구성 후 평가들을 마련하여 평가 진행
- 평가단 : 인권위원, 도민인권지킴이단, 전문가, 당사자 등으로 구성
- 근 거 :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9조, 제14조, 제19조

2 추진 경과

- '22. 1. 18. 「2022 인권증진시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국별 시행계획서 제출 협조 요청(인권증진팀)
- '22. 2. 21. 제4기 도 인권위원회 제3차 회의
 - 인권영향평가 대상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기로 함
- '22. 3. 18.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의 평가 대상 선정
 - '기업과 인권' 체계 견인 및 지원
 -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 주민건강영향조사의 확대와 강화

- '22. 3. 18. ~ 3. 25. 추천된 시책 및 평가 대상 담당부서 협의
- '22. 3. 31. 2022 시책 인권영향평가 추진 계획 수립
 - 추진시기 : 4 ~ 12월
 - 추진방법 : 평가대상 시책 3건 선정 후 평가단 구성하여 실시
- '22. 3. 31. ~ 4. 14. 시책 등 인권영향평가단 구성
 - 평가단 17명(기업과 인권 7, 주민건강 6, 어린이집 7)
- '22. 5. 12. 시책 인권영향평가 워크숍 및 1차 회의
 - : 시책 인권영향평가 이해를 위한 교육
 - 강사 : 신인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 충청남도 시책 인권영향평가 설명
 - : 시책별 평가단 1차 회의(단장 및 서기 선출)
 - '기업과 인권' 체계 견인 및 지원
(단장) 오복경(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서기) 김은희 (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 이주배경 아동의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단장) 김미정(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서기) 이지영(충남이주여성상담소 팀장)
 - 주민건강영향조사의 확대와 강화
(단장) 강봉준(충남강소기업인협동조합 이사장)
(서기) 안효권(당진발전본부민간환경감시센터 사무국장)
- '22. 5. 12. ~ 11. 29. 평가단 운영
 - '기업과 인권' 체계 견인 및 지원
 - '22. 5. 12.(목) 평가단 워크숍 및 1차 회의
 - : 단장 및 서기 선출
 - 단장 : 오복경(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 서기 : 김은희(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 '22. 7. 11.(월) 2차 회의
 - : 공공기관 인권경영의 인권쟁점 등 강의
 - 강사 : 오선영(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 : 담당기관 시책 설명
 - : 평가표 초안 관련 논의 등
- '22. 8. 8.(월) 3차 회의
 - : 시책 인권영향평가 평가 항목 논의
- '22. 9. 2.(금) 4차 회의
 - : 시책 인권영향평가 점검지표 및 절차 등 논의
- '22. 10. 25.(화) 실무자 면담(온라인 면담)
 - :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문화재단
- '22. 10. 27.(목) 실무자 면담(온라인 면담)
 - :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연구원
- '22. 10. 28.(금) 실무자 면담(온라인 면담)
 - : 충남개발공사, 충남신용보증재단
- '22. 11. 30.(수) 시책인권영향평가단 결과보고회
 - : 2022년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결과 발표 및 토론
- '22. 12. 13.(수) ~ 19.(월)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회의
 - : 시책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 결정문 검토
- '22. 12. 22.(화) 인권위원회 회의
 - : 시책인권영향평가 결과 담당부서에 권고 결정

■ 이주배경 아동의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 '22. 5. 12.(목) 평가단 워크숍 및 1차 회의
 - : 단장 및 서기 선출
 - 단장 : 김미정(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 서기 : 이지영(충남이주여성상담소 팀장)
- '22. 7. 8.(금) 2차 회의
 - : 이주배경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관련 인권쟁점 강의
 - 강사 : 이영아(균포아시아의창 이사)
 - : 담당부서 시책 설명
 - : 평가표 초안 논의 등
- '22. 8. 4.(목) 3차 회의
 - : 교육청 현황 보고
 - : 교육청 현황에 대한 담당부서 의견
 - : 인권영향평가 항목 구성 논의

- '22. 10. 14.(금) 4차 회의
: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최종 평가 추진
- '22. 11. 30.(수) 시책인권영향평가단 결과보고회
: 2022년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결과 발표 및 토론
- '22. 12. 13.(수) ~ 19.(월)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회의
: 시책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 결정문 검토
- '22. 12. 22.(화) 인권위원회 회의
: 시책인권영향평가 결과 담당부서에 권고 결정

■ 주민건강영향조사의 확대와 강화

- '22. 5. 12.(목) 평가단 워크숍 및 1차 회의
: 단장 및 서기 선출
 - 단장 : 강봉준(충남강소기업인협동조합 이사장)
 - 서기 : 안효권(당진발전본부민간환경감시센터 사무국장)
- '22. 7. 7.(목) 2차 회의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의 인권쟁점 강의
 - 강사 : 명형남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담당부서 시책 설명
: 평가표 초안 논의 등
- '22. 8. 11.(목) 3차 회의
: 시책 인권영향평가 평가항목 보고 및 수정 논의
- '22. 9. 15.(목) 4차 회의
: 시책 인권영향평가 평가항목 보고 및 수정 논의
- '22. 10. 6.(목) 4차 회의
: 시책 관련자 면담 및 최종 평가 추진
- '22. 11. 30.(수) 시책인권영향평가단 결과보고회
: 2022년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결과 발표 및 토론
- '22. 12. 13.(수) ~ 19.(월)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회의
: 시책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 결정문 검토
- '22. 12. 22.(화) 인권위원회 회의
: 시책인권영향평가 결과 담당부서에 권고 결정

3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기업과 인권’ 체계 견인 및 지원)

가. 평가 대상

- 시 책 명 : ‘기업과 인권’ 체계 견인 및 지원
- 시책부서 : 예산담당관 공공기관팀
- 평 가 단 : 7명(인권위원, 인권지킴이단, 전문가, 인권활동가, 당사자, 인권보호관)

※ 구성방법 : 인권위원(자천), 인권지킴이단(신청), 전문가(추천)

성명	소속	직책	비고
오복경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인권위원
김은희	(사)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인권위원
권중원	당진 YMCA	사무총장	인권지킴이단
박종관	백석대학교	교수	전문가
방효훈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센터장	전문가
성민혜	노무법인 하임	노무사	전문가
안성대	충청남도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인권보호관

나. 평가 과정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워크숍 및 1차 회의(22.5.12)에서는 시책 인권영향평가 교육과 제1차 회의를 통해 단장 및 서기를 선출하였다. 2차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인권경영의 인권쟁점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고, 담당기관에서 시책을 설명하여 평가표 초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차 회의에서 평가 항목을 논의한 데 이어 제4차 회의에서는 시책 인권영향평가 평가 지표 및 평가 절차를 논의했으며, 공공기관 인권경영 4단계를 마친 7개 기관에 대해 실무자 면담을 진행하여 평가 결과를 정리하였다.

다. 추진 일정

- '22. 5. 12.(목) 평가단 워크숍 및 1차 회의
: 단장 및 서기 선출
- '22. 7. 11.(월) 2차 회의
: 공공기관 인권경영의 인권쟁점 등 강의
· 강사 : 오선영(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 ： 담당기관 시책 설명
- ： 평가표 초안 관련 논의 등
- '22. 8. 8.(월) 3차 회의
 - ： 시책 인권영향평가 평가 항목 논의
- '22. 9. 2.(금) 4차 회의
 - ： 시책 인권영향평가 점검지표 및 절차 등 논의
- '22. 10. 25.(화) 실무자 면담(온라인 면담)
 - ：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문화재단
- '22. 10. 27.(목) 실무자 면담(온라인 면담)
 - ：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연구원
- '22. 10. 28.(금) 실무자 면담(온라인 면담)
 - ： 충남개발공사, 충남신용보증재단
- '22. 11. 30.(수) 시책인권영향평가단 결과보고회
 - ： 2022년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결과 발표 및 토론
- '22. 12. 13.(수) ~ 19.(월)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회의
 - ： 시책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 결정문 검토
- '22. 12. 22.(화) 인권위원회 회의
 - ： 시책인권영향평가 결과 도지사(담당부서)에 권고 결정

라. 평가점검표 및 점검 결과

I. 인권경영 추진 체계 구축

1. 인권경영 관련 규정의 정비

점검항목	점검기준(내용)	〈점검 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인권정책선언의 내용 적절성	•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준수 및 지지 의지 서술	○				
	• 공급망에 대한 인권정책 서술	○				
	• 주요 이해관계자 및 이들과의 소통 서술	○				
	• 구제절차 및 고충처리 정책 기술	○				
	• 선언의 주체(대표이사나 기관(기업)명)		○			

점검항목	점검기준(내용)	〈점검 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제정 과정 및 확산	• 대내외적 공개의 방식	○				
	• 내부와 공급망의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확산 활동	○				
	• 이해관계자에게 쉬운 언어로 번역하여 배포 등	○				

2. 조직과 제도 등

점검항목	점검기준(내용)	〈점검 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인권경영책임자	• 책임자 지정과 공개		○			
독립적 위원회	• 구성 여부		○			
	• 구성 절차의 적절성(공개성/투명성/전문성/ 이해충돌 등) - 직원대표 선정의 공정성	○				
	• 구성의 다양성		○			

II. 인권영향평가 실시의 적절성

1. 기관 운영 인권영향평가

점검항목	점검기준(내용)	〈점검 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	• 대상, 범위, 기간, 이해관계자 참여방법, 평가팀 구성		○			
	• 직전년도 평가 결과의 반영 사항 적시	○				
	• 해당년도에 활용할 체크리스트와 설명	○				
인권영향평가 실시	• 계획대로의 실시 여부 (특히 구성원 참여)	○				
	• 이해관계자 참여시 요청 사항 도출과 그 반영	○				
	• 주요 인권이슈 선정의 적절성	○				

2.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

점검항목	점검기준(내용)	〈점검 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과정과 절차의 적절성	• 계획대로의 실시 여부		○			
	• 중대성 평가 진행 여부	○				
	• 주요 이해관계자 목록 구성과 참여		○			
	• 이해관계자 참여시 요청 사항 도출과 그 반영		○			
주요 인권 이슈 도출과 대응계획	• 주요 인권이슈 선정의 적절성 사회적 관심 사안을 다루고 있는가		○			
	• 대응계획의 내용 적절성		○			
	• 대응계획 수립시 이해관계자 참여		○			
	• 대응계획 수립시 내부 논의** 과정 운영	○				

Ⅲ. 구제 절차

점검항목	점검기준(내용)	〈점검 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구제제도 구비	• 인권침해의 피해에 관한 구제절차 마련	○				
	• 구제절차의 실효적 운영 (안내와 접근성 등)	○				
	• 진정인(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제도	○				
	• 구제절차의 독립성 확보	○				
운영 성과	• 제기된 진정에 대한 구제절차 작동 여부	○				
	• 구제절차 작동 결과 (제도 개선 등)		○			
	• 주요 인권이슈 선정의 적절성				○	

Ⅳ. 인권경영의 소통 및 교육

점검항목	점검기준(내용)	〈점검 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인권경영 진행 핵심 사항 공개	• 인권경영추진체계	○				
	• 인권정책선언		○			
	• 인권영향평가결과 파악된 주요 인권 이슈		○			

점검항목	점검기준(내용)	〈점검 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 주요 인권이슈에 대한 기관의 대응계획 및 실천 성과		○			
	• 구제 절차에서 접수된 진정 건수 및 대응책	○				
	• 외부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실제 확인할 수 있을 것	○				
인권경영 교육	• 직무교육의 한 부분으로 전 구성원에게 실시		○			
	• 교육참여 비율과 만족도				○	
	• 교육방법과 내용		○			

마. 평가 내용 및 개선 방안

I. 인권경영 추진 체계 구축

1. 인권경영 관련 규정의 정비

- 인권정책선언의 내용 적절성

점검항목	점검기준(내용)	〈점검 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인권정책선언의 내용 적절성	•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준수 및 지지 의지 서술	○				
	• 공급망에 대한 인권정책 서술	○				
	• 주요 이해관계자 및 이들과의 소통 서술	○				
	• 구제절차 및 고충처리 정책 기술	○				
	• 선언의 주체(대표이사나 기관(기업)명)		○			

가) 평가 결과

- 인권정책 선언 주체를 최고 경영자로 명시해야 하지만 기관 명의로 명시하거나 임직원을 주체로 하는 기관이 존재함

나) 개선 방안

- 기업 운영의 인권경영 가이드 마련 필요
- 인권정책 선언 주체를 최고 경영자로 명시

• 제정 과정 및 확산

점검항목	점검기준(내용)	〈점검 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제정 과정 및 확산	• 대내외적 공개의 방식	○				
	• 내부와 공급망의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확산 활동	○				
	• 이해관계자에게 쉬운 언어로 번역하여 배포 등	○				

가) 평가 결과

- 기관별 인권경영 내용을 온라인상으로 공개하고 있음

2. 조직과 제도 등

• 인권경영책임자

점검항목	점검기준(내용)	〈점검 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인권 경영책임자	• 책임자 지정과 공개		○			

가) 평가 결과

- 인권경영 주체를 최고 경영자로 명시해야 하지만 기관 명의로 명시하거나 임직원을 주체로 하는 기관이 존재함

나) 개선 방안

- 인권경영 주체를 최고 경영자로 명시

- 독립적위원회

점검항목	점검기준(내용)	〈점검 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독립적 위원회	• 구성 여부		○			
	• 구성 절차의 적절성(공개성/투명성/전문성/ 이해충돌 등) - 직원대표 선정의 공정성	○				
	• 구성의 다양성		○			

가) 평가 결과

- 인권경영위원회는 구성원의 다양성이 중요하지만, 위원의 성비가 한쪽 성별의 60% 이상으로 성비 불균형인 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조치 필요

나) 개선 방안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의 한쪽 성별의 60%를 넘지 않도록 균형에 맞게 구성 필요

II. 인권영향평가 실시의 적절성

1. 기관 운영 인권영향평가

-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

점검항목	점검기준(내용)	〈점검 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	• 대상, 범위, 기간, 이해관계자 참여방법, 평가팀 구성		○			
	• 직전년도 평가 결과의 반영 사항 적시	○				
	• 해당년도에 활용할 체크리스트와 설명	○				

가) 평가 결과

-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에 대해 점검한 결과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기준으로 인권침해 구제절차 마련,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 인권경영체계를 전반적으로 잘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었음

나) 개선 방안

- 인권영향평가지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 인권영향평가

점검항목	점검기준(내용)	〈점검 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인권영향평가 실시	• 계획대로의 실시 여부 (특히 구성원 참여)	○				
	• 이해관계자 참여시 요청 사항 도출과 그 반영	○				
	• 주요 인권이슈 선정의 적절성	○				

가) 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는 모든 기관이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었음

2.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

• 과정과 절차의 적절성

점검항목	점검기준(내용)	〈점검 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과정과 절차의 적절성	• 계획대로의 실시 여부		○			
	• 중대성 평가 진행 여부	○				
	• 주요 이해관계자 목록 구성과 참여		○			
	• 이해관계자 참여시 요청 사항 도출과 그 반영		○			

가) 평가 결과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기관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거나 이슈 발굴 및 대응체계 마련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들이 인권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인권경영을 심도 있게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였으므로 인권경영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인권영향평가 실시 후 도에서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 필요

나) 개선 방안

- 충청남도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 매뉴얼 제시 및 전문교육 실시
- 매년 공공기관의 인권영향평가 보고 체계 마련

• 주요 인권 이슈 도출과 대응계획

점검항목	점검기준(내용)	〈점검 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주요 인권 이슈 도출과 대응계획	• 주요 인권이슈 선정의 적절성 사회적 관심 사안을 다루고 있는가		○			
	• 대응계획의 내용 적절성		○			
	• 대응계획 수립시 이해관계자 참여		○			
	• 대응계획 수립시 내부 논의 과정 운영	○				

가) 평가 결과

- 기관별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가 마련되어있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 마련 필요

나) 개선 방안

- 인권영향평가 후 인권 이슈 도출을 통한 기업 운영의 인권경영 가이드 마련
- 인권영향평가지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Ⅲ. 구제 절차

• 구제제도 구비

점검항목	점검기준(내용)	〈점검 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구제제도 구비	• 인권침해의 피해에 관한 구제절차 마련	○				
	• 구제절차의 실효적 운영(안내와 접근성 등)	○				
	• 진정한(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제도	○				
	• 구제절차의 독립성 확보	○				

가) 평가 결과

- 기관별 독립적 운영 및 구제, 보호제도가 마련되어있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내하고 있음

• 운영 성과

점검항목	점검기준(내용)	〈점검 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운영 성과	• 제기된 진정에 대한 구제절차 작동 여부	○				
	• 구제절차 작동 결과 (제도 개선 등)		○			
	• 주요 인권이슈 선정의 적절성				○	

가) 평가 결과

- 인권침해 구제 절차는 모든 기관에서 갖추고 있었으나 일부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에서는 신고, 접수된 이력이 없었음
- 이는 기관에서의 신고 분위기가 형성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고 절차나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를 통해 인권침해 사안을 개선해 나가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임

나) 개선 방안

- 인권침해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 인권침해 구제 절차 조사 심의 후 제도개선사항 관련 논의는 해당 기관의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진행

IV. 인권경영의 소통 및 교육

• 인권경영 진행 핵심 사항 공개

점검항목	점검기준(내용)	〈점검 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인권경영 진행 핵심 사항 공개	• 인권경영추진체계	○				
	• 인권정책선언		○			
	• 인권영향평가결과 파악된 주요 인권 이슈		○			
	• 주요 인권이슈에 대한 기관의 대응계획 및 실천 성과		○			
	• 구제 절차에서 접수된 진정 건수 및 대응책	○				
	• 외부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실제 확인할 수 있을 것	○				

가) 평가 결과

- 도내 공공기관 인권경영 담당자 간의 교류가 부족하여 상호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권경영 우수사례 발표 및 워크숍 등 기업 인권경영 촉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나) 개선 방안

- 관내 공공기관의 인권 경영 우수사례 발표 및 워크숍 등 기업의 인권 경영 촉진을 위한 방안 모색

• 인권경영 교육

점검항목	점검기준(내용)	〈점검 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인권경영 교육	• 직무교육의 한 부분으로 전 구성원에게 실시		○			
	• 교육참여 비율과 만족도				○	
	• 교육방법과 내용		○			

가) 평가 결과

- 기업과 인권 가치확산 관련하여 인권경영 선포식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알리는 경우도 있었으나, 매년 실시하지 않는 기관이 있었음. 임·직원, 노동조합, 공급망, 지역주민, 고객, 인권전문가 등 기관(기업) 경영활동에 관계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중요하기에 인권경영 추진 필요성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기업과 인권 가치확산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함
- 또한 인권 전담 부서에서는 담당자가 신규직원이거나 순환보직으로 인해 인권 업무를 전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부분 인권 전문교육을 받지 못한 채 업무를 맡아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인권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신규직원 교육 시 기업과 인권경영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는 곳은 없었고, 기업과 인권에 대한 기준과 관행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인권 존중 및 구체 등을 포괄하는 인권경영 전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기관별 인권경영 담당자 중 인권 의식 제고와 인권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온라인 인권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기관 모두 인권경영과 관련된 지식이 없는 상태로 업무를 맡기 때문에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권경영에 대한 대면 교육을 실시 필요

나) 개선 방안

- 기업의 인권 가치확산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실시
- 인권전담부서 및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신규직원 교육 시 인권경영 전반에 관한 내용 포함
- 대면 강의를 통한 공공기관 인권담당자의 역량 강화 교육 시행
- 공공기관의 인권교육 강사파견 필요

바. 권고문

충 청 남 도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시책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 ‘기업과 인권’ 체계 견인 및 지원 -

【 주 문 】

충청남도 도지사(예산담당관)에게, 충청남도 소속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을 위해 환경을 개선하고 종사자와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권고합니다.

1. 기관 개선사항

- 가. 기관별 특성에 맞는 인권영향평가 지표 마련
- 나. 인권영향평가지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 다. 인권영향평가 후 인권 이슈 도출을 통한 기업 운영의 인권경영 가이드 마련
- 라. 인권정책 선언 주체를 최고경영자로 명시
- 마. 인권경영의 책임자를 최고경영자로 명시
- 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의 한쪽 성별의 60%를 넘지 않도록 균형에 맞게 구성 필요
- 사. 인권침해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 아. 인권경영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 자. 인권침해 구제 절차 조사 심의 후 제도 개선 사항 관련 논의는 해당 기관의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진행
- 차. 기업의 인권 가치 확산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실시
- 카. 인권전담부서 및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실시
- 타. 신규직원 교육 시 인권경영 전반에 관한 내용 포함

2. 도 개선사항

- 가. 충청남도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 매뉴얼 제시 및 전문교육 실시
- 나. 매년 공공기관의 인권영향평가 보고 체계 마련
- 다. 대면 강의를 통한 공공기관 인권담당자의 역량 강화 교육 시행
- 라. 관내 공공기관의 인권 경영 우수사례 발표 및 워크숍 등 기업의 인권 경영 촉진을 위한 방안 모색
- 마. 기관별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 바. 공공기관 인권경영 4단계를 마치지 못한 기관의 추진 계획 점검

【 이 유 】

I. 평가 개요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에서는 2022년 2월 21일 도민 인권 증진시책 중 ‘기업과 인권’ 체계 견인 및 지원 시책을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충청남도 인권센터에서는 인권위원, 도민인권지킴이단, 전문가, 인권활동가, 도민인권보호관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기업과 인권’ 체계 견인 및 지원 시책 인권영향평가단은 워크숍과 1차 회의를 통해 단장 및 서기 선출을 하였고 1차 회의를 포함해 총 4차례 회의와 7개 기관* 인권경영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했고, 평가단 회의에서는 담당 부서 자체평가, 공공기관 인권경영의 인권 쟁점 등 교육, 담당 기관 시책 설명, 평가 기준 논의, 점검 결과 논의 등을 거쳐 평가를 마무리하였습니다.

* 2021년 12월 기준으로 도내 20개 공공기관 중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인권경영 4단계를 실시한 7개 기관
(충남개발공사, 충남연구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경제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문화재단)

평가 기준으로는 인권경영 관련 규정의 정비, 조직과 제도 등, 기관 운영 인권영향평가,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 구제 절차, 인권경영의 소통 및 교육 분야로 나누어 도내 공공기관에서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로 실질적 인권경영을 하고 있는지와 직원들의 인권침해 권리구제의 기능 작동 여부, 직원들의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등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II. 평가 내용

1. 기관 개선사항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에 대해 점검한 결과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기준으로 인권침해 구제 절차 마련,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 인권경영체계를 전반적으로 잘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만으로 평가 지표를 활용하다 보니 기관별 특성에 맞는 평가 지표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이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평가 지표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인권영향평가는 기관 구성원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기관별 평가 지표를 만들고 인권 이슈를 도출하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다양한 참여자를 통해 기업 운영의 인권경영 가이드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에 따르면 인권정책 선언 주체를 최고 경영자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인권정책 및 인권경영의 책임자를 최고 경영자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인권경영위원회는 구성원의 다양성이 중요한데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성비가 한쪽 성별의 60% 이상이어서 성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인권침해 구제 절차는 모든 기관에서 갖추고 있었으나 일부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에서는 신고, 접수된 이력이 없었습니다. 이는 기관에서의 신고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고 절차나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를 통해 인권침해 사안을 개선해 나가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권침해 구제 절차 조사 심의 후 기관별 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해 개선사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과 인권 가치확산 관련하여 인권경영 선포식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알리는 경우도 있었으나, 매년 실시하지 않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임·직원, 노동조합, 공급망, 지역주민, 고객, 인권전문가 등 기관(기업) 경영활동에 관계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중요하기에

인권경영 추진 필요성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기업과 인권 가치확산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인권 전담부서에서는 담당자가 신규직원이거나 순환보직으로 인해 인권업무를 전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부분 인권 전문교육을 받지 못한 채 업무를 맡아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인권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직원 교육 시 기업과 인권경영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는 곳은 없었고, 기업과 인권에 대한 기준과 관행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인권 존중 및 구제 등을 포괄하는 인권경영 전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2. 도 개선사항

충청남도 시책 인권영향평가단은 도내 공공기관 중 인권경영 4단계를 마친 7개 기관에 대해서만 점검하였고 나머지 13개 기관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이하에서는 공공기관 인권경영을 총괄하는 도 예산담당관에서 공공기관 인권경영 지원을 위해 하여야 할 사항을 적시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에만 의존하여 대부분 기관이 기관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형식적 인권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있어 인권 이슈 발굴 및 대응체계 마련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개선방안으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인권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들이 인권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인권경영을 심도 있게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였으므로 인권경영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인권영향평가 실시 후 도에서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관별 인권경영 담당자 중 인권 의식 제고와 인권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온라인 인권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기관 모두 인권경영과 관련된 지식이 없는 상태로 업무를 맡기 때문에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권경영에 대한 대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도내 공공기관 인권경영 담당자 간의 교류가 부족하여 상호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권경영 우수사례 발표

및 워크숍 등 기업 인권경영 촉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끝으로 충남도 내 공공기관의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Ⅲ. 결론

‘기업과 인권’ 체계 건인 및 지원 시책 관련하여 인권경영 4단계를 마친 도내 공공기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에 기반하여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지만, 기관별 특성과 운영내용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 도 관련 부서별로 개선할 사항을 도출했습니다. 본 시책에 대한 개선 권고는 아직 인권경영 4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기관들을 포함하여 공통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들이므로 도내 전체 공공기관에 전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 인권위원회는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2022. 12. 22.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4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이주배경 아동의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가. 평가대상

- 시 책 명 : 이주배경 아동의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 시책부서 : 출산보육정책과 보육정책팀
 - 평 가 단 : 7명(인권위원, 인권지킴이단, 전문가, 당사자, 인권보호관)
- ※ 구성방법 : 인권위원(자천), 인권지킴이단(신청), 전문가(추천), 당사자(추천)

성 명	소 속	직 책	비 고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인권위원
우정민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상담팀장	인권위원
안임숙	충청남도고령사회를이롭게하는충남여성연합	공동대표	인권지킴이단
김미정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전문가
수라마야	KC대학교 대학원	대학원생	당사자
이지영	충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팀장	전문가
안성대	충청남도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인권센터

나. 평가 과정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워크숍 및 1차 회의(22.5.12)에서는 시책 인권영향평가 교육과 제1차 회의를 통해 단장 및 서기를 선출하였다. 2차 회의에서는 이주배경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관련 인권 쟁점 교육을 진행하였고, 담당 기관에서 시책을 설명한 후 평가표 초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였다.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제3차 회의에서는 담당 부서가 참여하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유치원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보육비 지원 현황 보고 및 인권영향평가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차 회의에서는 최종 평가를 추진하여 평가 결과를 정리해 마무리하였다.

다. 추진 경과

- '22. 5. 12.(목) 평가단 워크숍 및 1차 회의
: 단장 및 서기 선출

- '22. 7. 8.(금) 2차 회의
: 이주배경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관련 인권쟁점 강의
• 강사 : 이영아(군포아시아의창 이사)
: 담당부서 시책 설명, 평가표 초안 논의 등
- '22. 8. 4.(목) 3차 회의
: 교육청 현황 보고, 교육청 현황에 대한 담당부서 의견
: 인권영향평가 항목 구성 논의
- '22. 10. 14.(금) 4차 회의
: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최종 평가 추진
- '22. 11. 30.(수) 시책인권영향평가단 결과보고회
: 2022년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결과 발표 및 토론
- '22. 12. 13.(수) ~ 19.(월)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회의
: 시책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 결정문 검토
- '22. 12. 22.(화) 인권위원회 회의
: 시책인권영향평가 결과 담당부서에 권고 결정

라. 평가표 및 점검 결과

인권분야	평가항목	계획여부	
정보접근권(4개)	1.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관련 안내가 다언어로 공유를 계획하고 있는가?	☐ 있음	☒ 없음
	2. 이용자에게 보육료 지원서비스에 따른 공공정보(알권리) 보장을 계획하고 있는가? (지원 및 위반사항 등 공표)	☐ 있음	☒ 없음
	3. 보육종사자와 이주민 가정 부모의 언어 소통이 원활하게 지원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가?	☐ 있음	☒ 없음
	4. 어린이집과 보육종사자에게 제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 있는가?	☐ 있음	☒ 없음
참여권(1개)	5. 사업진행 시 지원방향 및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 포함을 계획하고 있는가?	☐ 있음	☒ 없음
교육권(1개)	6. 보육종사자에게 이주민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교육(음식, 생활 등)을 계획하고 있는가?	☐ 있음	☒ 없음
공정한 복지를 받을 권리(1개)	7. 적절한 예산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는가? (도내 이주 배경 아동 인원 대비 예산 비율)	☐ 있음	☒ 없음

인권분야	평가항목	계획여부	
노동권(1개)	8. 이주 노동자 자녀의 보육 지원 인건비(보육교직원)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가?	☐ 있음	☒ 없음
평등권(4개)	9. 이주민 미등록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계획하고 있는가?	☐ 있음	☒ 없음
	10. 이주 노동자의 미등록 자녀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상위법)를 계획하고 있는가?	☐ 있음	☒ 없음
	11. 외국인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외국인 주민의 자녀 보육 지원 관련 조례 개정을 계획하고 있는가?	☐ 있음	☒ 없음
	12. 이주민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위한 법적, 제도적 문제의 해결책을 계획하고 있는가?	☐ 있음	☒ 없음

마. 평가 내용 및 개선 방안

I. 이주배경 아동 보육료 지원

가) 평가 결과

- 교육청은 유치원에 다니는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도청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이유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고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요청하기로 함

나) 개선 방안

- 교육청은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다문화가정 유치원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충청남도도 마찬가지로 「충청남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개정으로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자녀가 차별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를 지원할 것을 권고함

II. 평가표 기준에 따른 제안

- 도청이 이주배경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인권영향평가표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나 다음과 같이 제안하기로 함

① 정보접근권

- 이주배경 아동에 대해 어린이집 차액보육료가 지원된다면, 보육종사자와 한국어에 서툰 부모들이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언어로 안내가 필요하고, 지원 불가 사항 등에 대해서도 명시하여 상호 소통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함
- 아울러 보육종사자가 다언어 소통 기능자가 아니라면 이주민 가정 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이 어려우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처가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적절한 언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함

② 참여권

-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이 잘 되고 있는지 각 기관에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고 예산 추가 지원 여부 점검을 위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함께 이뤄져야 함

③ 교육권

- 보육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주배경 아동의 문화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차별 없는 보육이 이루어져야 함

④ 공평한 복지를 받을 권리

-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시 도내 이주 배경 아동 인원을 파악하여 차별 없이 누구나 실질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함

⑤ 노동권

- 이주노동자 자녀의 수 대비하여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도 함께 편성이 되어야 적절한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음

⑥ 평등권

- 미등록 이주아동은 불안정한 신분 특성상 보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미등록 이주노동자 부모들의 열악한 환경은 아동의 성장 및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불가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

바. 권고문

충 청 남 도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시책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

【 주 문 】

충청남도 도지사(출산보육정책과)에게, 충청남도 이주배경 자녀들의 어린이집 이용환경 및 차액보육료 지원 등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권고합니다.

1. 교육청은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다문화가정 유치원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충청남도도 마찬가지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개정으로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어있으므로 도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자녀가 차별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차액보육료를 지원할 것을 권고합니다.
2. 도 또는 시군이 이주배경 아동의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 1) 정보접근권
 - 가.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관련하여 보육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다언어로 공유
 - 나. 어린이집과 보육종사자에게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제도에 대한 안내
 - 다. 보육종사자와 이주민 가정 부모의 원활한 언어 소통 지원
 - 2) 참여권
 - 가.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시 지원 방향 및 모니터링 실시
 - 나.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3) 교육권

가. 보육종사자에게 이주민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 교육 실시

4) 공평한 복지를 받을 권리

가.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의 적정한 예산편성

5) 노동권

가. 이주노동자 자녀의 보육 지원을 위한 보육 교직원 인건비 계획 편성 마련

6) 평등권

가. 이주민 미등록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마련

【 이 유 】

I. 평가 개요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에서는 2022년 2월 21일 현안사안으로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충청남도 인권센터에서는 인권 위원, 도민인권지킴이단, 전문가, 당사자, 도민인권보호관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시책 인권영향평가단은 워크숍과 1차 회의를 통해 단장 및 서기 선출하였고, 1차 회의를 포함해 총 3차례 회의를 통해 이주배경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관련 인권 쟁점 교육, 담당 부서 시책 설명, 평가 기준 논의, 교육청 현황에 대한 담당 부서 의견, 인권영향평가 항목 구성 등을 거쳐 평가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평가 기준으로는 정보접근권, 참여권, 교육권, 공평한 복지를 받을 권리, 노동권, 평등권 분야로 나누어 항목을 만들어 도내 이주배경 아동이 적절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II. 평가 내용

도내 이주배경 아동을 키우는 부모가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였고, 도 교육청과 타 시·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현황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 국적 420명 규모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경기도는 그동안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감면을 추진해왔고 2023년부터는 만 3~5세 유아 보육료도 지원할 계획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포, 대구 달성군, 서울시 영등포구, 경북 경주시, 전북 정읍에서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충남도는 「충청남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개정으로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담당 부서 자체평가 결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 포함된 지원 대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충청남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어린이집에 다니는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차액 보육료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 한국이 가입 비준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유엔(UN) 아동 권리 협약에서는 아동이 어디에 있는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¹⁾하고 있으므로 도청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충남도나 시군이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를 지원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실시하여 인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 권한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1. 정보접근권

이주배경 아동에 대해 어린이집 차액보육료가 지원된다면, 보육종사자와 한국어에 서툰 부모들이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언어로 안내가 필요하고, 지원 불가 사항 등에 대해서도 명시하여 상호 소통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육종사자가 다언어 소통 가능자가 아니라면 이주민 가정 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이 어려우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처가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적절한 언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참여권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이 잘 되고 있는지 각 기관에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고 예산 추가 지원 여부 점검을 위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3. 교육권

보육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주배경 아동의 문화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차별 없는 보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공평한 복지를 받을 권리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시 도내 이주 배경 아동 인원을 파악하여 차별 없이 누구나 실질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5. 노동권

이주노동자 자녀의 수 대비하여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도 함께 편성이 되어야 적절한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평등권

미등록 이주아동은 불안정한 신분 특성상 보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미등록 이주노동자 부모들의 열악한 환경은 아동의 성장 및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불가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Ⅲ. 결론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관련하여 현재 도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 항목을 점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주배경 아동들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차별 없이 적절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충청남도 인권위원회는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2022. 12. 22.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가. 평가대상

- 시 책 명 : 주민건강영향조사의 확대와 강화
- 시책부서 : 푸른하늘기획과 생활환경보건팀
- 평 가 단 : 6명(인권위원, 인권지킴이단, 인권활동가, 전문가, 인권보호관)
- ※ 구성방법 : 인권위원(자천), 인권지킴이단(신청), 인권활동가(추천), 전문가(추천)

성 명	소 속	직 책	비 고
강봉준	충남강소기업인협동조합	이사장	인권위원
박은종	공주대학교	교수	인권지킴이단
안효권	당진발전본부민간환경감시센터	사무국장	전문가
박기남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상임이사	인권활동가
이준섭	당진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인권활동가
안성대	충청남도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인권센터

나. 평가 과정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워크숍 및 1차 회의(22.5.12)에서는 시책인권영향평가 교육과 제1차 회의를 통해 단장 및 서기를 선출하였다. 2차 회의에서는 강사를 통해 주민건강영향조사 이해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고, 평가표 초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였다. 제2차 회의에 이어 제3차 회의에서는 평가점검표를 항목별로 수정하였고, 4차 회의에서는 평가항목 최종 수정과 점검내용을 논의하였다. 마지막 5차 회의에서는 당사자, 종사자, 기관 담당자 면담을 통해 평가 결과를 확정하였다.

다. 추진 경과

- '22. 05. 12.(목) 평가단 워크숍 및 1차 회의
: 단장 및 서기 선출
- '22. 07. 07.(목) 2차 회의 : 평가 기준 논의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의 인권 쟁점 강의
• 강사 : 명형남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22. 08. 11.(목) 3차 회의
: 평가점검표 항목별 수정사항 점검
- '22. 09. 15.(목) 4차 회의
: 평가점검표 항목별 수정사항 점검
: 평가표를 토대로 평가 및 점검내용 논의
- '22. 10. 06.(목) 5차 회의
: 당사자, 종사자, 기관 담당자 면담 실시
: 평가 결과 확정
- '22. 11. 30.(수)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결과보고회
: 2022년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결과 발표 및 토론
- '22. 12. 13.(수) ~ 19.(월)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회의
: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 결정문 검토
- '22. 12. 22.(화) 인권위원회 회의
: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 담당 부서에 권고 결정

라. 평가표 및 점검 결과

인권 분야	평가 항목	해당 여부	
의견수렴 절차 (3개)	1. 조사지역과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 이해관계자 : 해당 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	☒ 예	☐ 아니요
	2. 조사 방법은 사전에 규정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 이해관계자 : 해당 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	☒ 예	☐ 아니요
	3. 통계 조사 결과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 이해관계자 : 해당 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	진행중	
개인정보 보호권	4. 조사과정에서 개인정보는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가?	☒ 예	☐ 아니요
정보 접근권 (3개)	5. 조사대상자들에게 사전에 조사의 취지와 목적, 일정 등에 대하여 의견수렴 및 상세한 사전 설명이 있었는가?	☒ 예	☐ 아니요
	6. 주민건강영향조사 종료 후 주민설명회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조사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는가?	진행중	
	7. 개인정보 제외한 조사 결과 전체를 당사자와 도 홈페이지에 공개 하였는가?	진행중	

인권 분야	평가 항목	해당 여부	
건강권 (2개)	8. 조사 중 대상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해산물 취식 금지 등의 조치에 대해 설명하는 절차가 있었는가?	☒ 예	☐ 아니요
	9. 조사 결과에 따른 대상자들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요
사생활 보호권 (2개)	10. 조사과정에서 조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개인 사생활 관련 조사 내용을 배제하였는가?	☒ 예	☐ 아니요
구제 절차	11.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발생 시 이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가 마련되어있는가?	☐ 예	☒ 아니요
거부할수 있는권리	12. 조사 전 및 진행 과정 중 주민들이 조사 거부 또는 기피를 할 수 있는가?	☒ 예	☐ 아니요
사회적약 자에 대한 편의제공	13. 조사과정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편의가 제공되었는가?	☒ 예	☐ 아니요
중장기 계획 마련 (2개)	14. 조사결과에 대한 직·간접적인 조치 마련을 위한 예산 및 계획이 있는가?(정밀검진비, 치료비 지원, 보상 등)	진행중	
	15. 주민들의 건강피해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조사계획 및 예산이 마련되었는가?		

마. 평가 내용 및 개선 방안

1) 의견수렴 절차

인권분야	평가항목	해당여부	
의견수렴 절차 (3개)	1. 조사지역과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 이해관계자 : 해당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	☒ 예	☐ 아니요
	2. 조사 방법은 사전에 규정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 이해관계자 : 해당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	☒ 예	☐ 아니요
	3. 통계 조사결과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 이해관계자 : 해당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	진행중	

가) 평가 결과

- 조사지역, 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해 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에 권고 불필요하다고 판단
- 조사 방법에 대해 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에 권고 불필요하다고 판단
- 조사 결과를 당사자에게 공개하고 있으나,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보도자료 배포 등의 공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나) 개선 방안

- 주민건강영향조사(5개년) 절차 종료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홈페이지, 보도자료 배포 등 공개 여부 결정 필요

2) 개인정보 보호권

인권 분야	평가 항목	자체평가	
개인정보 보호권	4. 조사과정에서 개인정보는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가?	☒ 예	☐ 아니요

가) 평가 결과

- 개인정보에 보안 절차에 따라 보호 중으로 권고 불필요하다고 판단

3) 정보접근권

인권 분야	평가 항목	자체평가	
정보 접근권 (3개)	5. 조사대상자들에게 사전에 조사의 취지와 목적, 일정 등에 대하여 의견수렴 및 상세한 사전 설명이 있었는가?	☒ 예	☐ 아니요
	6. 주민건강영향조사 종료 후 주민설명회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조사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는가?	진행중	
	7. 개인정보 제외한 조사 결과 전체를 당사자와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는가?	진행중	

가) 평가 결과

- 조사 대상자들에게 취지, 목적, 일정 등에 대해 4개 시·군에 방문하여 설명하고, 연구 방향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연구 진행하였기에 권고 불필요하다고 판단

- 조사 결과에 대해 한정된 의사의 여건상 개별적으로 답변은 어려울 수 있으나, 조사 내용이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의료진의 직접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건강영향조사 종료 후 최종 결과에 대해 답변 필요
- 주민건강영향조사 종료 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조사 결과를 당사자와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필요

나) 개선 방안

- 주민건강영향조사 종료 후 전문 의료진의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 필요
- 주민건강영향조사 종료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조사 결과 답변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필요

4) 건강권

인권 분야	평가 항목	자체평가	
건강권 (2개)	8. 조사 중 대상자들에게 일정 기간에 해산물 취식 금지 등의 조치에 대해 설명하는 절차가 있었는가?	☒ 예	☐ 아니요
	9. 조사 결과에 따른 대상자들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요

가) 평가 결과

- 해산물 취식 금지 등에 대한 안내는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고, 건강진단은 하고 있으나 심리상담은 지원하고 있지 않음

나) 개선 방안

- 심리상담 서비스 등 사후 조치에 대하여 대책 수립 필요
 - * 해당 지역주민들의 우울증 등의 현상이 발전소 및 기업체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상담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 지원 필요

5) 사생활 보호권

인권 분야	평가 항목	자체평가	
사생활 보호권 (2개)	10. 조사과정에서 조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개인 사생활 관련 조사 내용을 배제하였는가?	☒ 예	☐ 아니요

가) 평가 결과

- 조사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문항을 제외하고, 통계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통해 얻어서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기에 권고 불필요하다고 판단

6) 구제 절차

인권 분야	평가 항목	자체평가	
구제절차	11.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발생 시 이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예	☒ 아니요

가) 평가 결과

- 이동식 진료소 등을 통해 인권침해 발생에 대한 여지가 낮지만, 피해구제 절차는 마련은 필요하다고 판단

나) 개선 방안

- 인권침해 피해 구제 절차 마련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필요

7)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인권 분야	평가 항목	자체평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	12. 조사 전 및 진행 과정 중 주민들이 조사 거부 또는 기피를 할 수 있는가?	☒ 예	☐ 아니요

가) 평가 결과

- 조사 전 사전 동의를 통해 조사 거부 및 기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권고 불필요하다고 판단

8) 사회적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

인권 분야	평가 항목	자체평가	
사회적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	13. 조사과정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편의가 제공되었는가?	☒ 예	☐ 아니요

가) 평가 결과

- 직접 방문하는 대상자를 위해 마을별로 검진 차를 보내며 사회적약자에 대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으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등 편의 제공되고 있지 않음

나) 개선 방안

- 다양한 사회적약자를 고려한 편의 제공 필요(청각장애인 등)
- 청각장애인을 고려한 설문지 QR코드 활용(수어 통역) 서비스 필요

9) 중장기 계획 마련

인권 분야	평가 항목	자체평가
중장기 계획 마련 (2개)	14. 조사 결과에 대한 직·간접적인 조치 마련을 위한 예산 및 계획이 있는가? (정밀검진비, 치료비 지원, 보상 등)	진행중
	15. 주민들의 건강 피해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조사계획 및 예산이 마련되었는가?	

가) 평가 결과

- 직·간접적 조치 및 예산은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평가할 수 없음
- 주민들의 건강 피해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조사계획은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평가할 수 없음

나) 개선 방안

-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 지원계획 및 내용 공개 필요

바. 권고문

충 청 남 도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시책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 주민건강영향조사의 확대와 강화 -

【 주 문 】

충청남도 도지사(푸른하늘기획과)에게,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건강영향조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권고합니다.

1. 정보접근권

- 가. 주민건강영향조사 종료 후 전문 의료진의 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 필요
- 나. 주민건강영향조사 종료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필요

2. 건강권

- 가.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등 사후 조치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

3. 인권침해 구제절차

- 가. 인권침해 피해 구제절차 마련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필요

4.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

가. 다양한 사회적 약자(청각장애인 등)를 고려한 편의제공(수어통역 QR코드 서비스 등) 필요

5. 중장기 계획 마련

가. 조사 결과에 대한 직·간접적인 조치 마련을 위한 예산 계획 마련 필요
나. 주민들의 건강피해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지속적 조사계획 마련 필요

【 이 유 】

I. 평가 개요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에서는 2022년 2월 21일 도민 인권 증진시책 중 ‘주민건강영향 조사의 확대와 강화’ 시책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충청남도 인권센터에서는 인권 위원, 도민인권지킴이단, 전문가, 당사자, 인권보호관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주민건강영향조사의 확대와 강화’ 시책 인권영향평가단은 워크숍과 1차 회의를 통해 단장 및 서기를 선출 하였고, 평가단은 1차 회의를 포함해 총 4차례 회의를 했고 평가단 회의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의 인권쟁점 강의, 담당부서 시책 설명, 평가표 초안 논의, 평가항목 수정 등을 거쳐 시책 관련자 면담 및 최종 평가를 추진 하여 평가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평가 기준으로는 의견수렴 절차, 개인정보 보호권, 정보접근권, 건강권, 사생활 보호권, 인권침해 구제절차,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제공, 중장기 계획 마련 분야로 나누어 15개 평가항목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II. 평가 내용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연구용역을 수행한 「당진지역 석탄화력발전소가 주변 지역의 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견수렴 절차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 방법에 대해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의견이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권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였으며, 개인정보 관련된 자료는 원본은 캐비닛에 시건하여 보관하고, 사본은 비밀번호 보안을 통해 안전하게 보관 중이었습니다.

3. 정보접근권

주민건강영향조사 대상자들에게 취지, 목적, 일정 등에 대해 의견수렴과 상세한 사전 설명을 하였고, 담당 의사의 인력 여건상 개별적으로 조사 결과에 대해 답변은 어려웠습니다. 이에 주민건강영향조사 종료 후 전문 의료진의 최종 조사결과에 대해 의문을 가진 경우 답변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건강영향조사 종료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조사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도민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4. 건강권

주민건강영향조사 시 해산물 취식을 할 경우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취식 금지에 대해 사전 안내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의 우울증 등 현상에 대한 심리상담은 지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우울증 등 현상이 발전소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울증 등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등 지원이 필요합니다.

5. 사생활 보호권

주민건강영향조사 과정에서 성별, 연령, 직종만으로 구분하였고 필요시 건강보험 자료로 구분하여 조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생활 관련 조사 내용은 없었습니다.

6. 인권침해 구제 절차

주민건강영향조사 과정에서 이동식 진료소를 통해 개별적으로 조사하였고 별도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주민건강영향조사는 조사 전 사전 동의를 얻고 진행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사 거부나 기피를 할 수 있었습니다.

8. 사회적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

주민건강영향조사 시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대상자를 위해 마을별로 검진 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상자 중 청각장애인이 있지는 않았으나, 청각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약자를 고려한 편의 제공을 마련해야 하고 청각장애인을 고려한 설문지(수어 통역 QR코드 활용)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9. 중장기계획 마련

주민건강영향조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대해 점검할 수 없었으나, 추후 직·간접적인 조치(정밀검진비, 치료비 지원, 보상 등) 마련을 위한 예산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주민들의 건강 피해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조사계획 및 예산 또한 마련되어야 합니다.

Ⅲ. 결론

주민건강영향조사의 확대와 강화 시책 관련하여 연구용역이 5년 기간 동안 전문기관에서 수행되었다는 특징 때문에 대부분 평가 항목을 충족했고, 미충족된 항목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구제 절차 준비 미비가 있었으며, 조사 결과 공개와 조사 결과에 따른 구제 조치 등 중장기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충청남도 인권위원회는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2022. 12. 22.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참 고

1. 2021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개선 권고 결과
2. 2021년 시책 인권영향평가 개선 권고 결과
 - 2021년 시책 인권영향평가 추진 세부 내역
3. 통계로 보는 인권영향평가
4.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5. 충남 도민 인권선언문



참고 1

2021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개선 권고 결과

연번	해당부서	검토조례안	검토결과
1	예산담당관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원안동의
2	교육법무담당관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동의
3	균형발전담당관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동의
4	소방행정과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원안동의
5	소방행정과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	원안동의
6	소방행정과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시행규칙	원안동의
7	소방행정과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원안동의
8	소방행정과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학칙 규칙	원안동의
9	소방행정과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시행규칙	원안동의
10	소방행정과	충청남도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원안동의
11	소방행정과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칙	원안동의
12	소방행정과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13	소방행정과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원안동의
14	소방행정과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원안동의
15	소방행정과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원안동의
16	소방행정과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원안동의
17	소방행정과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원안동의
18	소방행정과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원안동의
19	소방행정과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원안동의
20	소방행정과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21	소방행정과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원안동의
22	소방행정과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23	소방행정과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원안동의
24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25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26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동의
27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동의
28	세정과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연번	해당부서	검토조례안	검토결과
29	기후환경정책과	충청남도 순환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원안동의
30	세정과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동의
31	인사과	충청남도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권고/ 권고수용
32	인사과	충청남도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원안동의
33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원안동의
34	환경안전관리과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수정권고/ 권고수용
35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충청남도 컨설팅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수정권고/ 권고수용
36	환경안전관리과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원안동의
37	운영지원과	충청남도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원안동의
38	운영지원과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원안동의
39	운영지원과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개정안	원안동의
40	문화정책과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41	운영지원과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42	문화정책과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안	원안동의
43	문화정책과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	원안동의
44	문화정책과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원안동의
45	문화정책과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능사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원안동의
46	문화정책과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권고/ 권고수용
47	문화정책과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권고/ 권고수용
48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동의
49	환경안전관리과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규칙 폐지안	원안동의
50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51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충청남도산림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수정권고/ 권고수용
52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수정권고/ 권고수용
53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동의
54	자연재난과	충청남도재해복구공채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원안동의
55	자연재난과	충청남도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원안동의

연번	해당부서	검토조례안	검토결과
56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동의
57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원안동의
58	공동체정책과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원안동의
59	119특수구조단	충청남도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원안동의
60	정책기획관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시행절차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61	교육법무담당관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62	교육법무담당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원안동의
63	교육법무담당관	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	원안동의
64	교육법무담당관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원안동의
65	교육법무담당관	충청남도 도시개발 조례	원안동의
66	교육법무담당관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원안동의
67	교육법무담당관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원안동의
68	교육법무담당관	충청남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원안동의
69	교육법무담당관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원안동의
70	교육법무담당관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원안동의
71	교육법무담당관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72	교육법무담당관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원안동의
73	교육법무담당관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원안동의
74	교육법무담당관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원안동의
75	교육법무담당관	충청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원안동의
76	교육법무담당관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원안동의
77	교육법무담당관	충청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규칙	원안동의
78	교육법무담당관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원안동의
79	교육법무담당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원안동의
80	교육법무담당관	충청남도도로보수용장비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원안동의
81	교육법무담당관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원안동의
82	교육법무담당관	충청남도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원안동의
83	교육법무담당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원안동의

연번	해당부서	검토조례안	검토결과
84	도로철도항공과	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수정권고/ 권고수용
85	경쟁정책과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안	수정권고/ 권고수용
86	국제통상과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원안동의
87	문화정책과	충청남도 문화원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원안동의
88	국제통상과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안	원안동의
89	운영지원과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개정안	원안동의
90	경제정책과	충청남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수정권고/ 권고수용
91	인사과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92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규칙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93	보건정책과	충청남도 도립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	원안동의
94	소상공기업과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95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권고/ 권고수용
96	119종합상황실	충청남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97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98	세정과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99	문화정책과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원안동의
100	화재대책과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동의
101	정보화담당관	충청남도 행정정보통신운영관리규정 전부개정안	원안동의
102	자연재난과	충청남도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폐지안	원안동의
103	문화유산과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동의
104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수정권고/ 권고수용
105	보건정책과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동의
106	인사과	충청남도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동의
107	세정과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	원안동의
108	세정과	충청남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원안동의
109	세정과	충청남도 도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원안동의
110	운영지원과	충청남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권고/ 권고수용

참고 2

2021년 시책 인권영향평가 개선 권고 결과

✔ 시책 인권영향평가 대상(3건)

년도	심의 건수	평가 대상	비고
2021	3	① 시책(충남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운영) ② 북한이탈주민 자녀 사회적응프로그램 ③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시책 3건

✔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구성 인원

구분	계(명)	인권위원	인권 지킴이단	전문가	인권 활동가	당사자
2021	18	7	5	3	1	2

시책	개선권고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수용여부 (담당부서)
충남수어통역센터 지원본부 운영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장에게, 1. 이용자 분야 가. 위급상황 통역서비스 지원체계 및 전문성 높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지침을 마련 다. 수요에 기반한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취업 연계 방안 마련과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 하도록 지원 라. 이용자와의 인권상담을 위한 매뉴얼 마련 2. 종사자 분야 가. 종사자의 노동환경을 고려한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 나. 종사자가 인권침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운영규정에 마련 다. 통역의 정확도와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어통역사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 라. 종사자의 업무와 관련한 매뉴얼 명 문화 및 교육 실시 3. 충남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운영 분야 가. 종사자 개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나. 이용자 실태조사 실시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 다. 이용자와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및 규정 마련 라. 이용자에게 수어통역 지원 후 모니터링(점검) 절차 마련 마.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마련	수용 ☐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충남수어통역센터본부에 개선 권고하고, 이행여부 등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이용자 개인정보, 사생활보호 강화, 시군센터 통역지원 방안 모색 - 종사자의 역량강화, 이용자만족도 모니터링 지원방안 등 - 종사자 및 이용자의 인권침해시 권리구제 받을수 있도록 개선 ☐ 충남도의 계획 - 위급상황 통역 서비스 : 수어통역센터와 협의 검토
		기타의견
		- 직업적응훈련 : 권고사항은 직업재활사업의 영역으로수어통역센터의 업무가 아님 *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예산범위내 추진하는 복지사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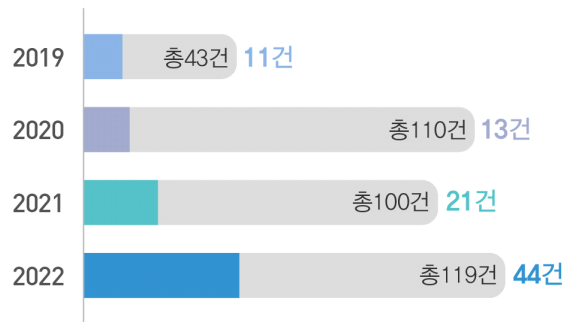
시책	개선권고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수용여부 (담당부서)
북한이탈주민자녀 사회적응프로그램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장에게, 1. 가족통합 서비스 참여자 분야 가. 충남 전 지역으로 서비스 분야 확대 나. 사업 참여 기간 확대 다. 사업 참여자의 인권보호 지침과 구제 제도를 마련하여 명문화하고 각종 동의서에 인권보호 안내 추가 필요 라. 사업 참여자의 상해보험 가입 필요 2. 통합지도사 분야 가. 인권 강사로부터 인권교육 시행 나. 교수법, 관계 형성 교육 등 정기적인 역량 강화교육 필요 다. 통합지도사의 인권보호 지침과 인권 침해 구제제도를 마련하고 명문화 하여 안내 필요 3. 수행기관 분야 가. '북한이주민'으로 용어개정 필요 나. 인권침해 및 차별적 행위에 대한 구제제도 마련 및 명문화 필요 다. 인권침해 구제 절차에 대한 안내 필요 라. 사업서비스 전 과정에 대한 객관적 점검과 세부적 지표마련, 모니터링 시행 마. 사업수행에 대한 적정 임금 지급 바. 사업량 대비 적정한 예산 지원 마련	수용
		□ 가족통합 서비스 참여자 분야 - (사업 참여 기간 확대) 기존 7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하겠음 - (사업 참여자 인권보호 지침과 구제 제도 마련 등) '22. 5. 30. 까지 마련토록 하겠음 - (사업 참여자의 상해보험 가입) 가족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가입 토록 하겠음 □ 통합지도사 분야 - (인권 강사로부터 인권교육 시행) 기추진 중임 - (교수법, 관계 형성 교육 등 역량 강화 교육 필요) 기추진 중임 - (통합지도사의 인권보호 지침과 구제제도 마련 등) '22. 5. 30. 까지 마련토록 하겠음 □ 수행기관 분야 - (인권침해 및 차별적 행위에 대한 구제제도 마련) '22. 5. 30. 까지 마련토록 하겠음 - (인권침해 구제 절차에 대한 안내 필요) 사업 초기 안내하겠음 -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객관적 점검 등) '연 2회 추진토록 하겠음 - (사업수행에 대한 적정 임금 지급) 사업 담당자 일 6시간, 주5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충청남도 기간제 근로자 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생활임금(1시간 / 10,510원)을 지급하고 있음 ※ '21년 4시간 → '22년 6시간 - (사업량 대비 적정한 예산 지원 마련) '23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음

시책	개선권고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수용여부 (담당부서)
		기타의견
		○ (충남 전 지역으로 서비스 분야 확대) 본 사업 수혜자는 6~16세 자녀 양육 탈북민 가정으로, 탈북민이 다수 거주하는 천안·공부·보령·아산·서산·당진 6개 지역 외 시군에는 대상 가정 부재로, 현재 전 지역 서비스 제공은 어려움 -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 가정 확인 시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 ('북한이주민' 용어개정 필요) 법령 개정 및 북한이탈주민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함으로, 향후 당사자들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관련기관에 건의를 하겠음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노인복지과/노인일자리팀)	충청남도 노인복지과장에게,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분야 가. 광역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나. 수행기관 간 실무협의회 구성 15개 시·군으로 확대·강화 다.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운영 15개 시·군으로 확대·강화 라. 사회복지사의 복잡한 행정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마. 사업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 절차 및 전문 담당자 필요 바. 사업 참여자의 인권 보호 지침과 구제제도 마련 사. 사업 참여자의 각종 동의서에 인권 보호 안내 추가 아. 사업 참여자의 안전사고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필요 2. 생활지원사 분야 가. 인권매뉴얼 마련 및 절차 교육 필요	수용
		▶ 시책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광역지원기관에 공문 발송 - 권고사항 이행 여부 등 지속적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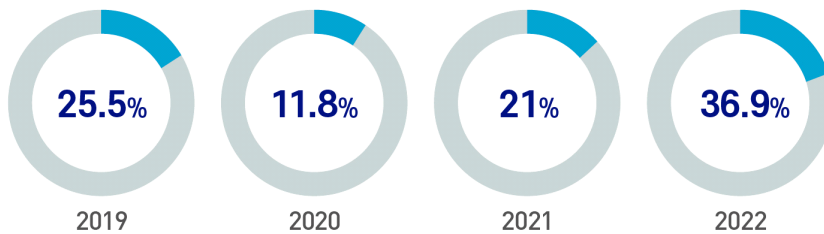
시책	개선권고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수용여부 (담당부서)
	나. 이용자 및 가족에게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인권 교육 실시 다. 가구 간 거리 차이를 고려한 생활지원사 당 돌봄 인원 조정 필요 라. 거리에 따른 교통비 차등적용 및 교통비 지급기준 현실화 방안 마련 마. 업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바. 생활지원사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상담 시스템 변경 사. 심리상담·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한 통합적 시스템 구축 아. 욕구 조사를 통한 기관·지역별 맞춤형 직무교육 필요 3. 이용자 분야 가. 이용자의 인권 보호 규정 및 절차 정기적 안내 필요 나. 인권단체, 시·군 도민인권지킴이단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기적인 인권 교육 실시 다. 이용자 욕구를 파악한 인권교육 방법의 다양화 모색 라.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 마련 마. 교통수단에 제약이 있는 이용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생활지원사의 동행 지원 서비스 제공기준 개선 바. 정기적으로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변경 사. 이용자에게 서비스 자격 결정 여부 안내 절차 마련	

참고 3 통계로 보는 인권영향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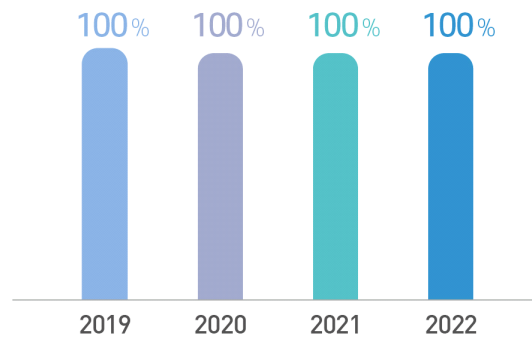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권고건수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권고율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권고 수용률



참고 4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정) 2018-10-01 조례 제 4387호
(일부개정) 2020-04-01 조례 제 4679호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민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도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도 소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약자”란 소외되기 쉬운 사람이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는 도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와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 인권선언의 정신과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권리 및 협력) ① 모든 도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③ 도지사는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도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모든 도민은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도민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보호 및 증진사업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도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인권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전략
4. 기본계획 실행에 필요한 재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인권정책 수립과 이행, 도민인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성별 분석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증진시책토론회)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인권증진시책 토론회(이하 “시책토론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책토론회는 도지사가 주관하며, 관계 부서 실·국장급 공무원과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위원, 도민인권지킴이단,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③ 시책토론회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인권행정 실현을 위해 관계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조정한다.

④ 시책토론회는 연 2회 개최하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인권지수의 개발)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권고 사항에 대한 도 차원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개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인권지수를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인권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규칙
2. 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시책 등

제10조(인권교육) ① 도지사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도의 사무위탁기관 또는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과 그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개발 및 연구
 2.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해마다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1조(인권지킴이단의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민인권 지킴이단(이하 “인권지킴이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지킴이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에서 진행하는 소정의 인권교육을 수료한 도민, 인권약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③ 인권지킴이단은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인권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활동
2. 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활동
3. 주요 인권정책에 관한 모니터링, 홍보와 지원활동
4.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제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제3항의 임무를 수행한 인권지킴이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인권정책 추진, 인권문화 확산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국내외 정부·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해 관련 전문가 등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인권위원회

제14조(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시책의 효율적 심의·자문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자문
3. 도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정책, 관행에 대한 자문 및 개선권고
4.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인권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호선(互選)하는 회의는 당연직 위원이 주재한다.

③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대한 식견과 경험을 충분히 갖춘 사람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 중에 인권약자를 포함해야

하고, 인권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1.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된 도민
 2. 인권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인권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인권 관련 교육, 법률 등 전문가
 5.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인권증진에 소양과 식견을 갖춘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장이 된다.

제1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회의 진행 및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위원회에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⑧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독립성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4. 위원회 활동 취지에 반하는 행동,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성실한 출석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3. 질병이나 국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위원회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도지사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인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인권위원회는 도의 제도, 정책, 관행 등이 도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인권센터

제19조(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도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를 둔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방안 연구
2. 인권침해 및 차별관련 상담조사 및 권리구제
3.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도민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연대·협력
5. 인권분야 정부기관·비영리 민간단체·법인과의 교류·협력
6. 인권증진활동(상담사례 등)보고서 발간
7. 그 밖에 도민의 인권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인권센터의 업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할 경우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구성) ① 인권센터에는 센터장과 상담 및 조사, 연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② 인권센터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도지사가 선임한다.

③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하되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인권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4. 인권, 성평등, 시민사회운동 등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21조(직무의 독립성) ① 도지사는 인권센터의 운영 및 활동에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인권센터의 장 등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③ 인권센터의 장은 인권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인권센터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직을 겸임할 수 없다.

제22조(인권보호관 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센터에 도민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인권보호관은 11인 이내 합의제 형태로 운영하고, 센터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상임 인권보호관과 6인 이내의 비상임 인권보호관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상임 인권보호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한다.

④ 비상임 인권보호관은 제20조제3항을 준용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비상임 인권보호관의 해촉은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3조(상담 및 조사) ① 인권센터의 장은 인권센터에 상담신청 등이 접수 되었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상임 인권보호관이 중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내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3.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5.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와 시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인권센터장이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로 하지 않을 수 있다.
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조사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 밖에 조사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 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 ③ 인권센터의 장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인권센터의 장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임직원, 전문가 등을 조사인력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 ⑤ 인권센터의 장은 인권 관련 도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건의할 수 있다.

제24조(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① 인권센터의 장은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도지사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결정은 인권보호관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인권센터의 장은 의결내용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위 결과를 신청인 및 피신청인, 조사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들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대한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지원) 도지사는 인권센터와 인권보호관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임 보호관 및 조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의 수당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6조(표창)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권활동가, 인권 관련 기관·단체,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제27조(비밀엄수)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 수행 과정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8조(준용)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의 보조금 신청·교부·정산,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충청남도 포상 조례」 등에 따른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 또는 임명된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인권지킴이단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 문

우리는 인간에게 존엄함과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충청남 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류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불의와 억압에 저항하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선조들의 의병운동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이어받고, 민족의 자주독립에 헌신했던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 발전 시킴으로써, 인류애와 정의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권리들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인간 존엄의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적, 인종, 성, 연령, 장애, 경제적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한 그 어떠한 차별도 단호히 거부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 소수자 존중은 관용과 연대의 우리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천명한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지역의 생태와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 나감은 물론, 인도주의 정신과 인권적 가치에 바탕을 둔 올바른 교육 환경과 풍토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자유로운 예술창작과 문화 활동을 보장하여 주민의 삶이 날로 풍요로워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인권이 꽃피어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도민의 민주적 참여와 대화를 통해 ‘충남도민 인권선언문’을 선포한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가꾸고 지키려는 지역적 노력의 차원을 넘어, 전 인류를 향한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연대를 실천하고자 하는 충청도민의 고귀한 약속을 담고 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과 의지를 모아, 충청남도의 모든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제1장 인권보장의 기본원칙

제1조 차별금지의 원칙

- ① 충남도민은 성별, 나이, 외모, 장애, 인종, 종교, 병력(病歷), 사상, 신념, 출신 및 거주지역, 결혼여부, 가족구성, 학력, 재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국적, 전과(前科), 임신, 출산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는 모든 차별행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도민의 인권을 보장한다.

제2조 민주적 참여의 원칙

- ① 충남도민은 충청남도의 주인으로서 행정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지며, 충청남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는 정보공개를 충실하게 하고, 충청남도의 정책결정과정,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

제2장 인간답게 살 권리

제3조 주민생활기본선의 보장

- ① 충남도민은 헌법에 따라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충청남도는 이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 ② 충청남도는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주민생활의 기본선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4조 주거에 관한 권리

- ① 충남도민은 건강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는 도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

제5조 교육에 관한 권리

- ① 충남도민은 교육에 적합한 시설과 환경에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교육을 받고 학습할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는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적합한 공간과 시설,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인권 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평화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건강에 관한 권리

- ① 충남도민은 건강을 누리고, 안전한 먹거리를 먹으며, 질병예방을 위한 교육과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는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중위생과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며, 경제적 이유 또는 정보 부재의 이유로 주민의 건강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가 있다.

제7조 문화에 관한 권리

- ① 충남도민은 다양성이 보장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충청남도는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시설을 마련하고,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책무가 있다.

제3장 안전하게 살 권리

제8조 안전에 관한 권리

- ① 충남도민은 모든 형태의 범죄와 폭력, 재해, 재난 기타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는 도민들이 차별 없이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

제9조 환경에 관한 권리

- ① 충남도민은 오염되지 않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오염원을 철저히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도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책무가 있다.

제10조 이동권 및 접근권

- ① 충남도민은 자기 의사에 따라 이동하고 공공이 왕래하는 모든 시설이나 행사에 그 사람의 장애나 신체의 불편 여부와 상관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는 이동 및 접근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다.

제4장 일과 권리

제11조 노동에 관한 권리

- ① 충청도민은 차별 없이 공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노동할 권리와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는 도민의 고용안정과 적절한 임금 보장, 노동조건 개선의 책임을 진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여성 및 이주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청소년 노동자, 고령 노동자 등 노동 약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 할 책무가 있다.

제12조 농어민의 권리

- ① 충청남도의 농어민은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받으며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농어업을 할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는 농어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농어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다.

제5장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

제13조 어린이, 청소년

- ① 충청남도의 어린이, 청소년은 건강하고 안전하며 차별 없이 성장할 권리를 갖는다.
- ② 충청남도는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적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하고, 교육받을 권리, 쉼 권리, 문화, 복지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며 도정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할 책무를 갖는다.

제14조 여성

- ① 충청남도의 여성은 나이, 외모, 결혼여부 및 출산,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고 평등할 권리를 갖는다.
- ② 충청남도는 여성이 가정, 직장, 일상에서의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폭력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책무를 갖는다.

제15조 장애인

- ① 충청남도의 장애인은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 받는다.

② 충청남도는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일상생활에 맞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립 가능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갖는다.

제16조 노인

① 충청남도의 노인은 빈곤과 외로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노후를 살아갈 권리를 갖는다.

② 충청남도는 노인이 존엄을 지키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할 책무를 갖는다.

제17조 이주민

① 충청남도의 이주민은 국적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충청남도는 이주민이 인종,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체류 자격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책무를 갖는다.

제18조 북한이탈주민

① 충청남도에 사는 북한이탈주민은 차별 없이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② 충청남도는 북한을 떠나 국내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 주거, 교육, 직업 등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19조 그 외 소수자

충청남도는 앞에 나온 사회적 소수자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책무를 갖는다.

제20조 그 외의 권리

이 선언에서 명시된 권리 외에 도민이 가지는 권리는 모두 동등한 가치로 존중되어야 하며, 이 선언에서 명시되지 않음을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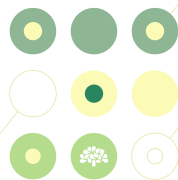
제6장 인권선언의 이행

제21조 이행체계의 마련

① 충청남도는 이 선언문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 및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수립 집행하여야 한다.

- ② 충청남도는 인권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충청남도는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④ 충청남도는 의회,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와 협력체계를 갖추고 인권교육 실시, 인권문화 확산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충청남도는 국내외의 지방자치단체, 국제인권기구 등과 교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⑥ 충남 지역 주민은 스스로 인권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인권공동체 구현의 주체로서 역량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2022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처 충청남도
편 집 충청남도 인권센터(041-635-2339)
인 쇄 선우(주) 041-632-2363

